

정책연구 08-50

역무통합 등 통신환경 변화에 따른 통신 회계제도 개선방안 연구

함창용/오성백/정 훈/맹승찬

2008. 12

서 언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 회계처리기준인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하 회계규정)’과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이하 회계분리기준)’을 제정하고 수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해 사업자로 하여금 전기통신 서비스 요금산정 및 망간 접속에 따른 사업자간의 거래에 대한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는 상호접속료,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출연금 등의 산정과 요금정보 산출에 있어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하여 정교한 사후규제 및 시의적절한 요금규제제도 확립을 위한 신뢰성 높은 회계정보를 산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를 개정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욱 최근 우리나라 방송·통신 시장 환경은 그 어느 때 보다 급변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규제측면에서는 올해 초 새 정부가 통신요금 인하 및 융합서비스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방송·통신 융합시대를 선도해나갈 새로운 규제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이로써 향후 방송·통신시장의 환경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보다 시의적절해지고 유연해지며, 규제 마련 및 집행에 있어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술측면에서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발전과 더불어 IP망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전화와 IPTV 등이 활성화됨으로써 기존의 유선전화, 지상파 및 유선방송의 대체서비스로 부상하였고, 이동통신에 있어서 3G서비스의 급신장과 WIBRO등 데이터기반의 무선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방송과 통신의 경계는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변의 방송통신 환경변화 속에서 시의적절하고 합목적적인 정책적 대응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회계정보가 정책결정의 기초

자료로 이용되고, 사업자의 회계정리 및 보고 의무 자체로서 간접적인 시장감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투명하고 합리적인 회계 제도 하에서 신뢰성 높은 회계정보의 산출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정비는 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본 연구는 공정경쟁정책연구실의 함창용, 오성백 선임연구위원이 총괄하여 수행하였으며, 정훈 책임연구원, 맹승찬 연구원이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학계와 현장의 전문가로서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 경희대학교 강병민 교수, 동국대학교 양동훈 교수, 대주회계법인 오충한 회계사, 안진회계법인 박언용 회계사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적극적인 도움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방송통신위원회 김진욱 주무관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08년 12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 장 방 석 호

목 차

서 언	1
요약문	7
제1장 서 론	13
제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제2 절 보고서의 구성	14
제2장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	15
제1 절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특징	15
1.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목적 및 필요성	15
2.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성격	16
제2 절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 연혁 및 주요내용	17
1.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연혁	17
2. 현행 회계규정 및 회계분리기준의 주요 내용	19
제3 절 과거 회계제도 연구결과의 정책 반영사항 정리	23
1. 전기통신사업의 규제회계제도(2002. 12)	23
2. 통신서비스 회계기준 개선방안 연구(2003. 2)	25
3.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 개선방안 연구(2004. 8)	30
4.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 개선방안 연구(2005. 12)	36
5.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한 회계연구(2007. 12)	37
제3장 회계제도 개선 방안	44
제1 절 단기 개선 이슈	44
1. 별정사업자 회계보고 의무	44

2. 판매촉진비 상한 규정	50
3. 단말기보조금 회계처리	60
4. 회계분리지침서의 공개의무	66
5. 영업권의 원가성 검토	69
6. 이동망 2G와 3G서비스의 회계분리	71
7. 마케팅 비용의 총괄원가 포함 여부	75
8. 역무통합으로 인한 통신회계제도 개선사항	79
제2절 장기 발전 방향	85
1. 전문가 의견	85
2. KISDI 의견	89
제4장 결 론	91
참고문헌	96
부 록	98

표 목 차

〈표 2-1〉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와 재무회계의 비교	16
〈표 2-2〉 회계규정(규칙) 및 회계분리기준의 변천	19
〈표 2-3〉 현행 회계규정의 주요내용	21
〈표 2-4〉 현행 회계분리기준의 주요내용	22
〈표 2-5〉 통신서비스 회계분리기준 개선방안 연구의 주요연구내용 및 정책반영여부	26
〈표 2-6〉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 개선방안 연구(2004. 8)의 주요연구내용 및 정책반영여부	30
〈표 2-7〉 음성/데이터 회계분리 사업자 의견	31
〈표 2-8〉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 개선방안 연구(2005. 12)의 주요연구내용 및 정책반영여부	36
〈표 2-9〉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한 회계연구(2007. 12)의 주요연구내용 및 정책반영여부	37
〈표 3-1〉 해외 주요 통신사업자의 단말기보조금 회계처리 방법	62
〈표 3-2〉 전기통신사업회계규칙상의 회계의무	73
〈표 3-3〉 각 손익명세서상의 역무구분	74
〈표 3-4〉 47 CFR part 32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익계산서 비용항목	77
〈표 3-5〉 회계분리 절차 개선안	79
〈표 3-6〉 전기통신기능설비의 세부분류 조항 개선안	80
〈표 3-7〉 역무의 지역별 회계분리 개선안	81
〈표 3-8〉 자산의 금융비용 회계처리 개선안	82
〈표 3-9〉 회계분리기준상 전송 및 선로공통 역무별 배부기준	83
〈표 3-10〉 E1환산 회선수	83

그림 목 차

[그림 2-1]	전기통신산업에서 회계제도의 역할	15
[그림 2-2]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현행 법체계	17
[그림 3-1]	전송원가와 속도와의 상관관계 변화	84
[그림 3-2]	수직적 규제에서 수평적 규제로의 전환	90

요 약 문

1. 연구 목표 및 필요성

역무가 통합되고 방송·통신 융합이 진전되면서 다양한 결합서비스 및 신규서비스가 등장하는 현 상황에서 사업자간의 공정경쟁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시장감시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산정과 사업자간의 거래에 대한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 관련 회계제도는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하며, 필요시 회계규정과 회계분리기준은 개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새로운 방송·통신 패러다임의 인식속에 기존의 회계제도를 재검토하고 나아가 회계제도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서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경쟁을 촉진하되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회계제도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2. 주요 연구내용

가. 현행 주요 통신회계제도 이슈

별정사업자 회계보고 의무 부여에 대해서는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유용한 정보 제공이라는 전기통신사업회계의 목적상 모든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그들이 제공하고 있는 모든 역무에 대하여 회계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회계정리 의무를 부과하기 이전에 전기통신사업에서의 공정경쟁을 유지하기 위하여 규제하여야 하는 서비스 혹은 역무가 무엇인가를

조사하고, 동 서비스 시장에서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유용한 회계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얻을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회계정리 의무 부과 여부는 사업자의 종류가 아니라 서비스 시장에서의 사업자의 영향력에 달려 있기 때문에 공정경쟁이 필요한 시장을 규정하고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회계정리 의무를 부과하여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를 방지하고 공정경쟁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판매촉진비 상한 규정은 규정의 적용가능성 및 적절성 검토 결과, 판매촉진비의 적정성을 규정하여 비용의 일부만을 원가로 인정하는 기준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현행 판매촉진비 상한규정에 의거하여 생산된 원가정보로 서비스 요금의 적정성을 판단하기에는 판단기준이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법조 문화 할 수 없으며, 이용약관을 심사하는 단계에서 판매촉진비 뿐만 아니라 다른 비용까지도 적정성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현행 회계분리기준의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는 분리기준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별표도 조정되어야 한다. 판매촉진비와 같이 사업자가 시장점유율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도하게 지출하는 경우 비용의 적정성 보다는 판매활동에서 야기되는 부당행위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정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사료된다.

단말기 보조금 회계처리 방안은 기간약정제하에서의 단말기보조금은 선급비용으로 자산의 성격을 가지므로 일단 자산으로 인식한 후에 수익과 대응시켜 기간 경과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전기통신회계에서도 기간약정 단말기 보조금은 자산으로 인식한 후 약정기간동안 상각하여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회계적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재무회계와의 일관성 유지 측면에서는 가능하면 재무회계와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나 통신회계에서 규제기관이 정책적 판단에 의해 기간약정 단말기보조금을 당기비용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회계분리지침서 공개의무 적절성에 대해서는 회계분리지침서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사업자의 영업비밀이라 판단되므로 현행 회계분리기준 제48조 제1항에 제2항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회계분리지침서가 무조건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고,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판단은 방송통신위원회 회계전문위원에서 판단하는 방안이 고려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M&A로 발생하는 영업권은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과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에 의거 재무제표상 무형자산의 항목으로 인식되어진다. 현행 회계분리기준 제36조(투자보수)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기저의 범위는 연평균 유형자산 등 장부가액+연평균 재고자산+적정운전자본이고, “연평균 유형자산등 장부가액”에서 “유형자산 등”이라 함은 무형자산을 포함한다. 따라서, M&A로 발생하는 영업권은 통신회계상으로도 무형자산으로서 총괄원가로 인정되고 있다.

이동망 2G와 3G 서비스의 회계분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행 회계분리기준 제3조 주과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에서 이동통신서비스를 셀룰러 또는 PCS서비스(2G)와 IMT2000서비스(3G)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2G와 3G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는 2G와 3G서비스를 회계분리하여 보고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동전화서비스가 비규제 서비스여서 이동사업자에 대해서는 회계보고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회계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동망 2G와 3G의 회계분리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회계분리하여야 한다.

나. 역무통합으로 인한 현행 전기통신 회계제도 개선사항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의 자산 등의 경우 전기통신사업에 사용중인 자산 등을 위한 형태별 분류와 기능별 분류체계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간 분류를 수행한 후 전기통신사업의 자산 등을 대상으로 형태별 분류

와 기능별 분류를 수행하도록 회계분리기준 제4조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회계분리기준 제14조의 전기통신기능설비의 세부분류는 접속원가산정 대상사업자를 위한 규정으로서 회계분리기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조항이므로 조항을 삭제하고 상호접속기준에서 규정하도록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회계분리기준 제5장 역무의 지역별 회계분리는 과거 무선호출서비스를 위한 조항이므로 삭제가 요구된다.

자산의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융비용의 회계처리는 기간비용으로 계상하여 사업자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투자보수 계상시 이중계상의 논란을 배제시키도록 회계분리기준 제7조에 관련내용의 추가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현행 E1급 기준의 회선수 배부기준은 속도와 원가가 정비례 관계에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메가(Mbps)급이나 기가(Gbps)급의 대용량회선이 보편화된 시점에서 속도와 원가의 상관관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전송 및 선로 공통 자산/비용에 대한 배부기준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다.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장기발전 방향

첫째, 기술발전과 통신환경 변화를 반영한 회계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최근 기술발전과 통신수요의 다양화로 인한 통합망(All-in-One Network)의 실현에 따른 신규 서비스, 지능망서비스, 결합서비스에 대한 제도 마련과 그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데이터통신의 합리적 회계분리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투자보수율 산정방안을 명시하여야 한다. 투자보수율은 통신원가의 핵심 요소임에도 회계분리기준과 상호접속기준, 보편적서비스기준, 설비제공기준 등에 방통위가 정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산정방식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 산정방식의 내용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회계정보가 이용되는 제반 정책제도와 연계성을 검토해야 한다. 회계정보가 사용되는 요금제도, 상호접속제도, 보편적서비스제도, 설비제공제도, 공정경쟁제

도와 관련한 기준들을 분석하여 통신회계규정이 그러한 제도목적에 적합한 원가정보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회계분리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다.

넷째, 회계전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 또는 명확화 해야 한다. 회계전문위원회에 회계분리기준에 관한 해석권 및 추가조항 신설권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결정이 회계분리기준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함으로써 적시에 정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국제회계기준에 대응하여 통신회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의 회계처리에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K-IFRS)은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공시체계, 자산과 부채의 평가방법 및 정책적 목적 등의 반영여부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통신회계상 관련 규정 명시 및 정비가 필요하다.

여섯째, IP기술과 네트워크 진화를 반영한 수평적 규제를 마련하고 이에 적합하게 회계분리기준을 보완해야 한다. 현행 회계제도는 역무구분, 설비구분, 음성/데이터 구분을 설정하고 있으나, All-IP망이 현실화되면서 콘텐츠 계층과 네트워크 계층으로 구분되는 수평적 규제하에서는 콘텐츠와 네트워크 계층의 분리 규제가 예상되고 통신역무는 단일화 되어질 것이다. 따라서 수평적 규제하의 콘텐츠 계층과 네트워크 계층간의 원가를 분리하고, IP기술과 네트워크에 적합한 회계분리 배부기준의 연구가 필수적이라 사료된다.

일곱째, 회계보고 의무 사업자의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 수평적 규제체계가 실현될 경우 사업자 구분은 전송사업자로 단일 구분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기간/별정/부가 통신사업자의 구분에 의해 회계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상황평가에 의해 회계보고 의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에게 회계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3. 연구결론 및 시사점

통신서비스 시장의 IP화와 융합화 현상은 향후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통신환경 변화는 현행 회계제도에 의한 서비스별 회계분리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정교하고 투명한 회계정보 제공을 위해서 회계제도는 장·단기적인 통신시장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함께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연구되어야 한다.

제1 장 서 론

제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전기통신산업은 막대한 설비투자가 요구되는 장치산업이며 동일한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중심의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회계기준으로는 유용한 서비스별 회계정보를 산출하기 어렵다. 특히 최근 통신서비스 시장은 통신서비스와 방송서비스의 디지털화 및 융합화의 진전과 사업자간의 치열한 경쟁 등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본격적인 융합이 진전되고 다양한 결합서비스 및 신규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원가정보는 기업의 의사결정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결정에도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994년에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전기통신사업 회계처리기준인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칙(이하 회계규칙)’을 제정하여 사업자로부터 요금산정과 사업자간의 거래에 대한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게 하였다. 또한 1996년에는 공통자산과 공통비 배부기준을 규칙으로부터 분리하여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및 표준양식(이하 회계기준)’을 제정하였다. 이후 통신시장의 경쟁 확대 및 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 관련 규정들은 지속적으로 개정 보완되어 왔다.

2008년 2월에 방송과 통신의 본격적인 융합시대를 이끌어갈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과 더불어 기존의 회계규칙은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되었다. 역무가 통합되고 방송·통신 융합이 진전되면서 다양한 결합서비스 및 신규서비스가 등장하는 현 상황에서 사업자간의 공정경쟁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시장감시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매우 중요하므로 전기통신사업 관련 회

계제도는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하며, 필요시 회계규정과 회계분리기준은 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새로운 방송·통신 패러다임의 인식속에 기존의 회계제도를 재검토하고, 나아가 회계제도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서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경쟁을 촉진하되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회계제도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 절 보고서의 구성

본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2장에서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특징과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 연혁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과거 회계제도개선 관련 연구결과의 정책 반영사항을 요약·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회계제도의 단기적 개선 이슈를 검토하고 장기적 발전방안의 제안을 통해 통신회계제도의 장·단기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단기적 개선 이슈로는 첫째,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의 차등해소를 위해 별정통신사업자의 회계분리의 무 부과 방안을 검토하였다. 둘째, 공정경쟁 촉진을 위해 회계기준의 판매촉진비 상한 규정을 재검토하고, 아울러 단말기보조금의 회계처리 방안을 연구하였다. 셋째, 규제완화 추세 및 사업자의 경영 자율성 보장 측면에서 회계기준의 회계분리지침서 공개 규정을 검토하여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넷째, M&A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영업권의 통신회계상의 원가 포함여부를 검토하였다. 다섯째, 3G서비스의 활성화에 따른 이동망의 2G와 3G서비스의 회계분리 여부를 검토하였다. 여섯째, 역무통합 및 융합환경 환경하에서 유용한 회계정보 및 원가정보를 효과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개선점을 연구하였다. 또한,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각 연구주제별로 관련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검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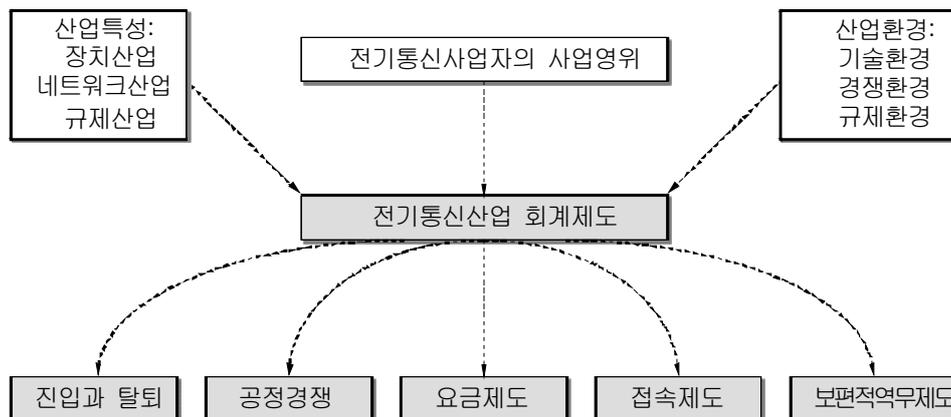
제 2 장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

제 1 절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특징

1.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목적 및 필요성

전기통신산업은 대규모 장치산업, 네트워크산업, 서비스 비저장성, 규제산업, 서비스 산업 및 하이테크 산업으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으로 상기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으므로 전기통신사업에서 발생하는 경제활동을 기록·측정·집계하여 보고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회계기준이 필요하다. 회계규정 제3조에서는 전기통신사업회계의 목적을 ‘방송통신위원회, 해당 사업자 등이 전기통신역무 원가의 산정,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료·설비제공대가의 산정,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산정, 역무간 상호보조행위 등 전기통신사업의 공정경쟁과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림 2-1) 전기통신산업에서 회계제도의 역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목적은 제반 전기통신사업의 정책수립과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역무의 원가정보를 포함한 유용한 회계정보를 산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성격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성격을 보면 정책기관이라는 기업의 외부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신뢰성과 일정한 양식을 갖추어야 하는 재무회계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정보제공이 아닌 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정부외의 일반인이나 외부에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과 기능별·역무별 또는 서비스별 원가 및 수익 등에 대한 세분화된 회계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반면에, 전기통신산업의 특성상 동일한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근에는 결합판매의 증가에 따라 공동원가 및 공동수익의 합리적 회계분리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이를 위해 역무 또는 서비스별 회계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리회계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통신회계에서는 수익과 비용의 인식 대상이 회사가 아니라 개별 역무라는 것이 중요한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와 재무회계제도와와의 차이는 아래 <표 2-1>과 같다.

<표 2-1>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와 재무회계의 비교

구 분	통신회계	재무회계
목 적	규제목적 달성	재무적 정보 제공
이해관계자	규제기관, 당해사업자	투자자, 금융기관, 일반 대중 등
관련 규정	회계규칙, 회계분리기준 등	기업회계기준, 회계준칙 등
성 격	원가회계	일반회계
수익·비용 인식	개별 역무별	회사 전체
결과물	영업보고서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
작성·제출 주기	1년 기준(약식: 반기보고서)	분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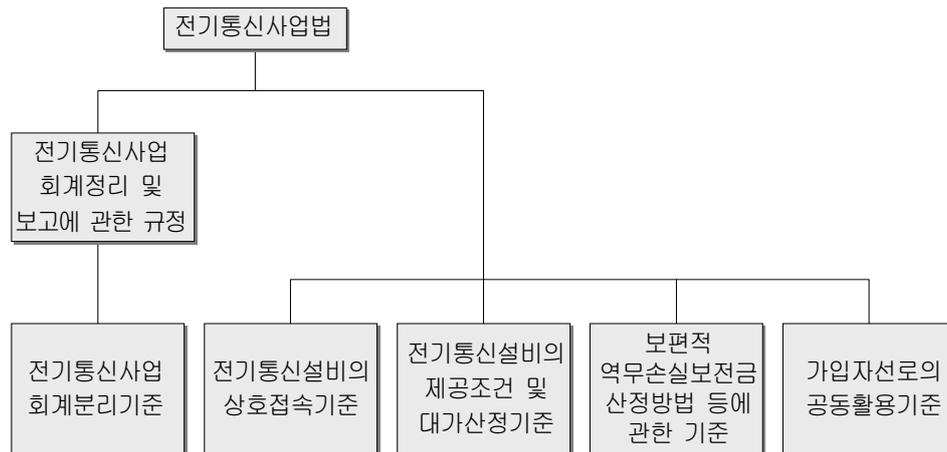
제 2 절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 연혁 및 주요내용

1.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연혁

가. 현행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법체계

현재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과 더불어 기존의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칙’이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663호)’(이하 ‘회계규정’이라 함)으로 변경되어 개정되었고, 동 규정의 제4조제2항·제16조제2항·제17조·제19조제2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64호)’(이하 ‘회계분리기준’이라 함)이 개정·공표되었다. 개정된 회계규정과 회계분리기준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보편적 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및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과 더불어 [그림 2-2]와 같이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를 구성하고 있다.

[그림 2-2]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현행 법체계



나.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연혁

1991년 8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된 이후, 회계규칙은 1994년 8월에 최초로 제정되어 2008년 2월말 5차 개정까지 이루어졌다. 1994년 최초 제정시에는 기간통신사업자 회계분리를 제도화하고, 영업보고서의 제출기한을 명시하였다. 1996년에는 1차 개정시에는 고정자산 및 비용의 역무별 분류와 전화역무별 분류 내용이 회계분리기준 및 표준양식에 위임되었고, 회계분리대상 역무수가 변경되었다. 이후 2001년에 2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2차 개정에서는 전기통신사업회계의 목적이 공정경쟁을 위한 회계정보 제공이라고 명시하였고, 회계분리대상 역무수를 또다시 4개로 변경하였다. 2005년 3차 개정에서는 영업보고서의 제출 및 검증기관의 변경과 무형자산 분류의 변경 및 인터넷접속역무와 인터넷전화역무 추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가장 최근에 행해진 2007년의 4차 개정에서는 영업수익, 비용등의 분류 개정 및 신설, 역무별 회계분리의 원칙 개선, 역무별 회계분리의 대상역무 개정, 정보처리설비의 정의 개정 등이 이루어졌다. 2008년 2월말에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칙’이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663호)’으로 변경되었다.

총칙을 포함하여 총6장으로 구성된 회계분리기준은 1996년 6월 최초 제정되어 현재까지 5차 개정에 이르고 있다. 최초 제정시의 주요내용은 20개의 회계분리대상 서비스 규정과 내부거래가격의 제정 및 역무의 지역별 회계분리 규정 등이다. 2001년 1차 개정시에는 회계규칙 2차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회계분리대상 서비스 확대,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 총괄원가의 정의 및 범위 신설, 통신위원회 산하 회계전문위원회 설치, 판매촉진비 상한에 관한 규정들이 추가 또는 신설되었다. 2005년 1월 2차 개정시에는 전화부가서비스 등의 세부 역무를 추가하고, 자산 및 비용의 기능별 분류 일부를 수정하였고, 동년도 12월에는 회계규칙 3차 개정의 개정사항들을 반영한 또 한번의 회계분리기준 개정이 시행되었다. 2006년 12월의 4차 개정시에는 무선통신역무에 와이브로가 추가되었고, 결합판매 수익의 분리와 광동축혼합망 관련 배부기준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가장 최근에 행해진 2007년의 회계분리기준 개정에서는 역무통합에 따른 세부역무 정의가 개정되어 별정통신역무가 삭

제되었고, 광동축혼합망의 기능별 분류와 광동축혼합망 및 IP기반서비스의 역무별 원가배부기준이 신설되었으며, 감가상각방법 및 내부거래제도 개선, 설비사용료 및 무형자산상각액의 기능별 분류 개선, 공동자산 및 운영비의 배부조항 개정, 별지서식 수정 등 광범위한 범위의 회계분리기준 개선 및 수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2008년 5월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으로 인하여 용어 변경이 있었다.

〈표 2-2〉 회계규정(규칙) 및 회계분리기준의 변천

시기	법령 또는 고시	제정 및 개정 내용
1991년 8월	전기통신 사업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 요금산정의 공정성: 상호내부보조, 가격요소조작, 비용전가 금지
1994년 8월	회계규칙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통신사업자 회계분리의 제도화: 통신역무간 회계분리 회계분리된 영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제출 총칙을 포함하여 총6장으로 구성
1996년 5월	회계규칙 1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정자산 및 비용의 역무별 분류와 전화역무별 분류 내용을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및 표준양식에 위임 회계분리대상 역무를 8개에서 7개로 변경
1996년 6월	회계분리기준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부서비스 도입으로 회계분리대상 서비스를 20개로 규정 내부거래가격의 제정 역무의 지역별 회계분리 규정
2001년 3월	회계규칙 2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통신사업회계의 목적을 공정경쟁을 위한 회계정보 제공으로 명시 7개 역무를 4개로 바꿈
2001년 3월	회계분리기준 1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규칙 개정 사항의 반영 회계분리대상 서비스를 20개에서 27개로 확대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 규정 총괄원가의 정의 및 범위 신설 통신위원회 산하 회계전문위원회 설치 판매촉진비 상한 규정 추가
2005년 1월	회계분리기준 2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화부가서비스 등의 세부 역무 추가 자산 및 비용의 기능별 분류 일부 수정
2005년 12월	회계규칙 3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업보고서의 제출 및 검증 기관이 정보통신부장관에서 통신위원회로 변경 무형자산 분류의 변경 인터넷접속역무 및 인터넷전화역무 추가

시기	법령 또는 고시	제정 및 개정 내용
2006년 12월	회계분리기준 4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선통신역무에 와이브로 추가 • 결합판매 수익의 분리 조항 신설 • 광동축혼합망 관련 배부기준 신설
2007년 11월	회계규칙 4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수익, 비용등의 분류 개정 및 신설 • 역무별 회계분리의 원칙 개선 • 역무별 회계분리의 대상역무 개정 • 정보처리설비의 정의 개정
2007년 12월	회계분리기준 5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무통합에 따른 세부역무 정의 개정(별정통신역무 분류 삭제) • 광동축혼합망의 기능별 분류 신설 • 광동축혼합망 및 IP기반서비스의 역무별 원가배부기준 신설 • 감가상각방법 및 내부거래제도 개선 • 설비사용료 및 무형자산상각액의 기능별 분류 개선 • 공동자산 및 운영비의 배부조항 개정 • 별지서식 수정
2008년 2월	회계규칙이 회계규정으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에 따른 법령 재고시. 기존 법령과 내용은 동일
2008년 5월	회계분리기준 개정	

2. 현행 회계규정 및 회계분리기준의 주요 내용

회계규정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행하여야 하는 회계처리에 대한 원칙과 기본적인 지침을 규정하여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틀을 제시하고, 가장 기본적인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기본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회계규정은 총칙,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역무별 회계분리, 보칙의 총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적용대상, 전기통신사업회계의 목적, 일반원칙을 제시하고 있고, 영업보고서의 종류와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의 구분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제2장 대차대조표에서는 유형 및 무형자산의 구성, 통신설비의 분류 및 정의, 일반지원자산, 미착자산, 건설중인 자산과 무형자산의 분류 및 정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3장 손익계산서에서는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의 세부항목을 정의하고 있고, 더불어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의 범위를 규정하

고 있다. 제4장 역무별 회계분리에서는 역무별 회계분리의 원칙과 역무의 분류, 영업비용등의 역무별 분리 및 전국사업자의 지역별 회계분리의 의무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제5장 보칙에서는 영업보고서 제출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영업보고서 검증을 위한 분리지침서 및 관련 회계자료 제출의무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표 2-3〉 현행 회계규정의 주요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1조~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적용대상, 전기통신사업회계의 목적, 일반원칙 • 영업보고서의 종류 •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의 구분
제2장 대차대조표 (7조~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 및 무형자산의 구성(사용 중인 자산과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자산으로 구분) • 통신설비의 분류 및 정의 • 일반지원자산, 미착자산, 건설중인 자산과 무형자산의 분류 및 정의
제3장 손익계산서 (13조~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수익의 세분류: 요금수익, 접속료수익, 국제정산수익, 내부거래수익, 자가소비사업용 수익, 보편적역무손실보전수익 등 • 영업비용(인건비, 경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액, 경상개발비와 연구비, 설비사용료, 국제정산부담금, 접속료, 내부거래비용, 자가소비사업용 비용)과 영업외비용(출연금, 전기통신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익, 보편적역무손실보전비용) 등의 분류
제4장 역무별 회계 분리 (15조~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무별 회계분리의 원칙 • 역무의 분류: 전송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역무, 부가통신역무로 분류 • 영업비용등의 역무별 분리: 직접분류 우선의 원칙과 세부사항에 대한 회계분리기준으로의 위임 • 전국사업자의 지역별 회계분리의 의무
제5장 보칙 (19조~2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회계년도 종료 후 90일내 영업보고서 및 분리지침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 • 관련 회계자료의 요구

회계분리기준은 회계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업보고서의 작성을 위한 실제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표 2-4〉 현행 회계분리기준의 주요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1조~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용어의 정리 및 세부역무의 정의: 6개 역무 24개 서비스 • 회계분리의 절차 및 회계정리단위
제2장 자산등의 형태별 분류 (6조~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의 형태별 분류, 유형자산 등의 취득 및 감가상각방법 •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의 형태별 분류 • 내부거래 및 자가소비사업용수익 및 비용의 인식 • 결합판매 수익의 분리
제3장 자산 등의 기능별 분류 등(13조~2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통신설비의 기능 및 세부분류, 자산 및 비용의 기능별 분류 • 기능공동자산 및 공통비의 분류기준 및 배부 •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의 분류, 미사용공동자산등의 분류
제4장 역무별 회계 분리 (22조~3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과 자산의 역무별 회계분리 기준 • 전기통신설비운영, 일반지원자산운영, 판매영업기능, 고객서비스기능, 일반관리기능, 기타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 • 공동전기통신설비, 공동일반지원자산, 기타 역무공동자산 역무별 배부 • 총괄원가, 사업비용, 투자보수
제5장 역무의 지역별 회계분리 (37조~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비용, 영업외비용등, 유형자산등의 지역별 분류
제6장 보칙, 부칙 (40조~4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부기준등의 적용, 회계분리지침서 및 보고서 제출, 검증 • 회계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회계 관련 자료의 정리 및 유형자산 등의 관리 기록 • 통계의 보고 및 보고서 등의 공개

현행 회계분리기준은 총칙, 자산등의 형태별 분류, 자산등의 기능별 분류 등, 역무별 회계분리, 역무의 지역별 회계분리, 보칙의 총6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에서는 회계분리기준의 목적을 명시하고, 용어와 세부역무의 정의, 회계분리의 절차 및 회계정리단위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제2장 자산등의 형태별 분류에는 유형자산,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의 형태별 분류, 유형자산 등의 취득 및 감가상각방법, 내부거래와 자가소비사업용 수익 및 비용의 인식, 결합판매수익의 분리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제3장 자산등의 기능별 분류 등에는 전기통신설비의 기능 및 세

부분류, 자산 및 비용의 기능별 분류, 기능공동자산 및 공통비의 분류기준 및 배부,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의 분류, 미사용공동자산등의 분류에 관한 조항들이 규정되어있다. 제4장 역무별 회계분리에서는 비용과 자산의 역무별 회계 분리 기준들이 명시되어 있고, 총괄원가,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다. 제5장 역무의 지역별 회계분리에서는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 및 유형자산의 지역별 분류에 관한 조항이 담겨있고, 제6장 보칙에는 배부기준의 적용, 회계분리지침서 및 영업보고서 제출과 검증에 관한 사항, 회계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사업자의 회계관련 자료의 정리에 관한 사항, 통계의 보고 및 보고서 등의 공개에 대한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다.

제 3 절 과거 회계제도 연구결과의 정책 반영사항 정리

1. 전기통신사업의 규제회계제도(2002. 12)

2002년 12월의 보고서는 기존 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정과목과 회계분리 기준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세분화된 계정과목들을 설정하여 회계처리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은 역무분류체계, 세부역무분류, 계정과목정의,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의 범위, 영업비용의 분류방법, 판매영업비 분류, 일반관리기능비용의 분류, 이동전화서비스의 분류 등이다.

가. 역무분류체계

회계규칙에서는 사업법과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먼저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으로 분류하고, 그 다음 전기통신사업을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하고, 마지막으로 기간통신사업과 별정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에 대해 역무를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또한 기존 회계규칙에는 규정되지 않고, 회계고시에만 규정되어 있는 초고속정보통신역무를 회계규칙에서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나. 세부역무 분류

회계분리대상 역무의 세분화는 세부역무간 공통비를 줄여 정확한 원가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히면서, 전화번호안내서비스를 기타기간통신역무로 전환하고, 지능망전화서비스를 전화역무의 세부역무로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또한 이동통신서비스를 ‘음성전화서비스’와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로 세분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다. 계정과목의 정의

기존 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계정과목들을 정의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작성에 필요한 모든 계정과목의 정의를 회계규칙에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라.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의 범위

영업비용의 계정과목을 결정하여 ‘매출원가·판매비·관리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행 회계규정 및 회계분리기준 상 영업수익에 포함되어 있는 내부거래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산서 항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영업수익을 요금수익, 접속료수익, 국제정산수익의 합계액으로, 영업비용을 전기통신설비운영비용, 판매영업비용, 전원설비운영비용, 일반지원자산운영비용, 관리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액,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 설비사용료, 국제정산부담금, 접속료의 합계액으로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하였다.

또한, 요금수익과 접속료수익의 세분류는 부속명세서에서 제시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즉, 요금수익은 기본료수익, 통화료수익, 장치비, 부가수익, 기타요금수익 등으로 세분화하고, 접속료수익도 접속통화료, 접속설비료, 부대서비스료 등으로 세분화하여 부속명세서에 표시하지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다. 영업비용 분류방법

손익계산서의 영업비용은 역무별로 제시하는 것보다 계정과목별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즉, 전기통신설비운영비용, 판매영업비용, 전원 운영비용, 일반지원자산운영비용, 관리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경상연구비 및 개발비, 설비사용료, 접속료, 국제정산부담금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영업비용의 역무별 분류는 회계분리 후 부속명세서에 제시하는 방안을 피력하였다.

바. 판매영업비 분류

기존 고객센터, 요금청구수납, 판매촉진으로 분류하던 판매영업비의 세부 항목 중 판매촉진비용의 표시항목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단말기보조금과 멤버쉽관련 비용의 분류를 통해 정부가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사. 일반관리기능비용의 분류

일반관리비를 전기통신설비 지원 일반관리비, 판매영업 지원 일반관리비, 일반관리 지원 일반관리비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아. 이동전화서비스의 분류

이동전화역무를 셀룰러 혹은 개인휴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이동통신음성서비스와 셀룰러 혹은 개인휴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이동통신데이터서비스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음성전화서비스와 데이터통신서비스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IS-95AB와 CDMA2000-1x로 분리해야 하는데, 교환 및 전송설비는 적절한 배부기준에 의하여 직접구분하고, 선로설비는 전송설비의 배부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2. 통신서비스 회계기준 개선방안 연구(2003. 2)

2003년 2월의 보고서에서 연구된 주요 주제는 판매촉진비용 상한선 제도, 음성·데이터 회계분리,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개선방안 및 회계규정(구 '회계규칙')

및 회계분리기준(구 ‘회계고시’)상 원가배부기준 수정 및 보완 등이다.

〈표 2-5〉 통신서비스 회계기준 개선방안 연구의 주요연구내용 및 정책반영여부

주요 연구 내용	정책 반영 여부
판매촉진비용 상한선 제도 개선 방안	미반영
음성·데이터 회계분리	미반영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개선 방안	반영
회계규칙 및 회계고시상 원가배부기준 수정 및 보완	반영

가. 판매촉진 비용 상한선 제도

2003년 2월의 보고서는 기존 회계고시상의 판매촉진비 상한선 제도의 적용방안과 세부적인 방법론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판매촉진비 전체에 대한 상한선을 정하기보다는 판매촉진비를 구성하고 있는 비용요소에 대한 각각의 상한선 혹은 산정기준을 정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여, 판매촉진비의 세부계정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상한선 적용 방안을 논의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론내용으로서 판매촉진비용의 상한선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 판매촉진비용의 상한선을 설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명백하여야 하고, 적정한 요금 산정이 목적인다고 한다면 가칭 ‘요금산정기준’을 제정하여 사업비용과 요금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요금을 결정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상한선의 목적이 공정경쟁이라면 판매촉진비용에 대한 상한선 보다는 판매촉진비용의 세부계정에 대하여 상한선 내지는 산정기준을 정하여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한 규칙하에서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며 판매촉진비용 중 모집수수료와 대리점운영지원금의 지급기준을 동일하게 정할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판매촉진비용에 속하지는 않으나 공정경쟁을 위하여 대리점에 지급되는 수수료인 업무취급수수료와 요금납부수수료도 사업자간 동일하게 정하고, 단말기보조금을 금지한다면 단말기보조금과 관련된 비용은 사업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위반 시 과태

료를 부과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서비스 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멤버십과 마일리지제도로 발생하는 비용 역시 사업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나. 음성·데이터 회계분리

데이터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서비스가 통신사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음성과 데이터 공통원가의 분리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회계분리방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연구가 진행되었고, 주요 기간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이슈 및 대안을 개진하였다.

주요 결론으로서 유선통신망의 경우, 가입자선로 원가는 당시 Line Sharing에 의한 xDSL 서비스를 이용하는 음성 및 데이터 수요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합한 원가동인과 배부기준을 결정하기 이전까지는 음성과 데이터를 5:5로 나누는 기존 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입자중계의 음성과 데이터 원가 배부는 가입자중계가 TS 비용의 성격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으므로 통화량에 의거 배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동통신망의 경우, 이동망 원가의 음성데이터 회계분리와 관련해서는 Coverage 관련 공통원가의 50%를 각각 음성/데이터로 분리하자는 대안을 제기하였다. 또한, CDMA2000-1x Traffic 관련 공통원가는 음성서비스 제공을 위한 증분비용만을 음성 부분에 배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개진되었다.

다.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개선방안

전기통신사업 회계가 규제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 규칙과 기준이 규정하고 있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에 대해 살펴보고, 각 계정과목의 정의의 필요성 등 급변하는 통신환경에 적합한 규제제도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역무분류체계, 세부역무분류, 계정과목 정의,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의 범위, 영업비용의 분류방법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전기통신사업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하였다.

라. 회계규칙 및 회계분리기준의 원가배부기준 수정 및 보완

기존 회계규칙 및 고시상의 기능별에서 역무별·서비스별 회계분리를 위한 배부기준은 합리성 및 타당성에 대한 실증적 검토 없이 규정되었고, 사업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서 모든 사업자들이 규정된 배부기준을 획일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약점을 개선을 하기위해 '01년도 회계기준 개정안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로써 기능별 공통원가 배부기준, 비전기통신사업 분류기준, 역무별 회계분리 배부기준 및 지역별 회계분리 배부기준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1) 기능별 공통원가 배부기준 개선방안 반영

공통기능설비의 기능별 배부기준은 기능별 인원수 또는 취득가액으로 기존의 배부기준을 인정하였다. 일반지원자산 및 무형자산을 전기통신기능자산, 판매영업기능자산, 일반관리기능자산, 일반지원기능공통자산으로 기능분류하고, 판매영업기능지원자산은 고객서비스기능지원자산, 청구·수납기능지원자산, 판매촉진기능지원자산, 판매영업공통기능지원자산으로 세분류하여 판매영업공통기능지원자산을 고객서비스기능, 청구·수납기능, 판매촉진기능별 인원수로 배부하도록 하였다.

비용역시 자산의 개선방안을 준용하되 일반지원자산운영비용중 판매영업기능 자산 운영비용은 이미 판매영업기능이 별도의 대기능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과는 달리 세분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무형자산상각비는 무형자산의 기능별 분류를 준용하였다.

(2) 비전기통신사업 분류기준 개선방안 반영

전기통신사업과 비전기통신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등은 비전기통신사업의 유형이 다양할 뿐 만 아니라 그 성격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주체인 사업자가 합리적인 배부기준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그 배부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따라서, 비전기통신사업의 분류는 기능별 분류 이전에 사업자가 결정한 배부기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단, 비전기통신사업과 그 배부기준을 회계분리지침서에 명확히 제시하여 사전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3) 역무별 회계분리 배부기준 개선방안 반영

교환기능설비의 역무별 배부기준의 경우 사용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산출이 어려운 경우 역무별로 직접분류된 교환설비 취득가액 비율로 배부하도록 규정하였다. 선로기능설비의 경우 중계선로를 전송기능설비의 기준을 준용한다고 수정하였고, 전원기능설비의 경우 공통자산배부후 교환기능설비, 전송기능설비, 단말기능설비, 정보처리기능설비의 역무별 장부가액 합계액을 배부기준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교환기능설비에서 정보처리기능설비까지 모두 배부기준에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 단말설비, 정보처리설비라는 명칭을 기능별 분류의 명칭으로 수정하여 교환기능설비, 전송기능설비, 단말기능설비, 정보처리기능설비로 수정하였다.

전기통신설비 지원기능 자산은 공통 전기통신기능설비의 역무별 배부 후 역무별 장부가액기준을 준용한다고 수정하였고, 일반지원자산운영비용의 역무공통비 배부는 토지, 건물 등 건축물은 역무별 면적비율로, 그 외의 일반지원자산은 역무별 취득가액비율로 배부하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토지, 건물 등 건축물을 역무별 면적비율로 배부하기 어려운 경우 회계분리후 역무별 일반지원기능자산의 취득가액비율로 배부하도록 추가로 규정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법인세비용은 회사 전체의 역무에 배부하도록 하며, 영업이익이 적자인 역무에도 법인세비용을 배부하도록 역무별 영업손익 비율에 의해 배부한다고 수정하여 조문을 명확히 하도록 하였다.

(4) 지역별 회계분리 배부기준 개선방안 반영

회계고시의 지역별 회계분리 규정은 현 상황에 맞도록 전반적인 개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보편적서비스제도가 실시되면서 지역별 회계분리 규정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지역별 회계분리 배부기준을 연구하여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 개선방안 연구(2004. 8)

2004년 8월의 연구보고서에서는 기존 회계규정과 제반기준의 법적 체계를 검토하고, 각 기준의 내용과 회계규정간의 연관성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전기통신사업 환경변화에 따른 주요사항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유효경쟁을 위한 현행 회계규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한 후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표 2-6〉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 개선방안 연구(2004. 8)의 주요연구내용 및 정책반영여부

주요 연구 내용		정책 반영 여부
법적 체계 및 제반 기준과의 연계성에 따른 개선	제반기준 용어 검토	- 업보고서 작성기간 개정안 미반영 -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규정 미반영 (2006년 12월 개정시 반영)
전기통신사업 환경변화에 따른 개선	음성·데이터 서비스간 회계분리	미반영
	LM전화서비스 회계분리	미반영
	인터넷접속역무의 회계분리	회계분리 개선안 미반영
	지역별과 권역별 회계분리	지역별 회계분리 삭제안 미반영
	판매영업비 계정 세분화	수정 반영
전기통신회계제도 미비점 개선	판매촉진비용 상한선	미반영
	별정통신사업	미반영
	내부거래와 자가소비거래	2007년 12월 개정시 반영
	전화부가서비스의 회계분리	반영
	배부기준	전원기능설비 배부기준 미반영
총괄원가관련 회계규정	정통부장관이 투보율을 정하지 않을 경우 상호접속기준에 의한 투보율 적용 규정안 미반영	

가. 법적 체계 및 제반 기준과의 연계성에 따른 개선

(1) 제반기준 용어 검토

‘비전기통신사업’을 ‘전기통신사업외 사업’으로 용어 수정하였고, 이는 현행 회

계분리기준 제4조(회계분리의절차)4호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회계규정의 영업 보고서 작성기간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서 ‘매년 3월말까지’로 변경하는 개선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역무의 명칭을 수정하였는데 회계규정과 회계분리기준에 ‘무선통신역무’를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로, ‘초고속정보통신역무’를 ‘인터넷접속역무’로 수정하여 반영하였다. 영업수익의 정의를 요금수익, 접속수익, 국제정산수익, 보편적역무손실보전수익 등으로 세분화하였고, 이는 현행 회계규정 제13조(영업수익의 분류)에 반영되어 있다. 감가상각방법을 회계분리기준 제8조에 정액법으로 고정하여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이는 2006년 12월에 와서야 회계분리기준에 반영되었다.

나. 전기통신사업 환경변화에 따른 개선

(1) 음성·데이터 서비스간 회계분리

음성·데이터 서비스간 회계분리는 현재까지 회계분리기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본 보고서에 담겨있는 음성/데이터 회계분리 사업자 의견은 아래와 같다.

〈표 2-7〉 음성/데이터 회계분리 사업자 의견

KT	SKT	KTF	LGT
CDMA2000-1X의 경우 데이터에 최소한 40% 이상 배부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성·데이터 공통 원가의 가장 합리적 원가동인은 설비증설의 원인임(즉, 개별서비스의 망에 미치는 부하 정도) - 고정된 비율에 따라 배부하는 것은 매우 임의적이고 연속성이 결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안: CDR에 기록되는 V/D의 실제 통화초수비율에 따라 공통비 배부 - 2안: V/D의 traffic 전환을 위해 표준 음성전송속도를 패킷으로 전환하여 실제 패킷사용량을 시간으로 환산, V/D의 공통비용 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DMA2000-1X 원가는 V/D traffic 비율에 따라 배부 - LGT는 upgrade 방식이므로 traffic 비율에 따른 분리가 더욱 타당 - EVDO 원가는 모두 D로 간주해 접속원가에서 제외 - V/D 공통설비에 대해서는 해당 장비를 사용하는 traffic 양에 따라 배부

(2) LM전화서비스 회계분리

LM전화서비스의 세부업무 지정안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3) 인터넷접속역무의 회계분리

먼저 인터넷접속역무 및 세부역무를 정의하였다. 기간통신역무로 규정된 인터넷접속역무는 현행 회계분리기준의 초고속정보통신역무와 기타 전기통신역무의 부가통신서비스를 모두 포함하게 되며, 세부역무로 인터넷가입자 접속역무와 인터넷백본 접속역무를 모두 포함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인터넷접속역무의 세부역무를 정의하기 위해서 우선 인터넷가입자 접속역무와 인터넷백본 접속역무로 구분을 하여야 하며, 인터넷가입자 접속역무는 가입자 접속방식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 회계분리방안에 대해서는 인터넷접속역무의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인터넷가입자 접속역무와 인터넷백본 접속역무의 회계분리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역무화된 인터넷접속역무와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간에 더 이상 내부거래를 할 수 없으므로 인터넷접속역무의 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동 서비스와 다른 서비스간에 발생하는 공통원가는 전기통신사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분리 하는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인터넷백본이 없는 인터넷가입자 접속역무 기간통신사업자는 인터넷가입자 접속역무가 인터넷백본 접속역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백본 서비스를 제공함에 발생하는 비용은 인터넷가입자 접속역무와 인터넷백본 접속역무와 공통원가 되며 적절한 배부기준으로 배부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기존 백본망의 사용요금은 속도에 따른 대역폭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므로 회계분리의 배부기준도 속도에 따른 대역폭으로 정하는 개선안을 개진하였다.

이상의 인터넷접속역무의 회계분리는 2005년 1월의 회계분리기준 개정에서 기존의 '초고속정보통신역무'가 '인터넷접속역무'로 수정되고, 인터넷접속역무는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와 '인터넷가입자백본서비스'로 구분하는 내용만이 반영되었고, 회계분리방안에 대한 개선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4) 지역별과 권역별 회계분리

과거 무선호출 사업을 위한 조항이었던 역무의 지역별 회계분리 조항을 삭제하는 개선안을 내놓았으나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권역별 회계분리는 역무별 회계분리가 수행된 후 수행되므로 권역별 배부기준을 회계분리기준에 규정할 필요는 없으며, 권역별 회계분리가 필요한 보편기준에 권역별 배부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러나 이에 따른 개선사항으로서 기존 보편기준 제6조의 제3항에 제시되어 있는 권역별 회계분리 기준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여 제시하도록 하는 방안은 보편 기준에 반영되지 않았다.

(5) 판매영업비 계정 세분화

기존 회계분리기준은 판매영업비용을 고객서비스, 청구·수납, 판매촉진으로 구분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분류로는 판매영업비용의 적절한 분류가 수행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세분화된 판매영업비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판매영업비용을 판매촉진비용, 광고선전비, 상품개발비, 단말기보조금으로 세분화하고, 고객서비스비용을 가입자관리비용, 청구·수납비용, 전화번호안내비용으로 세분화하는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개선안에서 판매영업비용 중 상품개발비와 고객서비스비용 중 전화번호안내비용을 제외한 사항들이 현행 회계분리기준에 반영되어 있다.

(6) 판매촉진비용 상한선

이전 보고서에서 다루어졌던 판매촉진비용 상한제도에 관한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판매촉진비용의 상한이 궁극적으로 사업자들로 하여금 판매촉진비용을 상한선 이하로 지출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판매촉진비용 전체의 상한 설정은 원가보상율을 증가시키고, 요금의 인하 압력을 야기시킬 것이며, 이 경우 도리어 후발사업자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과당경쟁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판매활동에서 필수적인 대리점 운영과 관련된 수수료를 적정한 수준에서 3사 공통으로 적용하게 하고, 전기통신사업과 관련이 없는 고객서비스비용을 지출하지 못하게 하며, 사업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는 판매촉진비용 지출을 금하게 하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

와 같은 규제는 회계분리기준 개정을 통한 요금규제보다는 공정경쟁 준칙에 의한 사업자간의 공정경쟁 합의 혹은 과태로 부과 등을 통한 강력한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판매촉진비의 상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상징적으로 유지할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고 하였다.

다. 전기통신 회계제도 미비점 개선

(1) 별정통신사업과 부가통신사업

기존 전기통신업무에는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회계처리와 회계분리가 이슈가 되었으나, 2007년 12월에 역무통합이 반영된 회계분리기준 개정안이 발표됨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에 대한 정의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2) 내부거래와 자가소비거래

내부거래 제공서비스를 전화역무와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로 규정하고, 내부거래 이용서비스를 전화역무와 부가통신역무로 규정하는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나 이는 반영되지 않았고, 이후 2007년 12월 회계분리기준 개정시에 반영되었다.

자가소비거래는 사업자의 직원이 근무중에 사업자가 제공하는 역무 혹은 서비스를 소비하는 경우에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이 반영되지 않았다.

(3) 전화부가서비스의 회계분리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에서 정의 한 바와 같이 전화부가서비스는 지능망 서비스와 전화정보제공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로 정의하는 개선안을 마련하였고 이는 현행 회계분리기준 제3조(세부역무의정의)에 반영되어 있다.

(4) 배부기준

2004년 8월의 보고서에서는 자산 및 수익, 비용의 기능별·역무별 배부기준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를 수행하였다. 먼저 사업분리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사업의 공통자산 배부기준을 사업자가 정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하였고, 이는 현행 회계분리기준 제20조(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의 분류)에 반영되어 있다.

기능별 회계분리 관련하여 공통설비 및 공통설비운영비용의 배부에 있어 공통 전기통신설비는 기능별 장부가액 비율로, 공통설비운영비용은 기능별 취득가액 비율 또는 관련 인원수 비율을 기준으로 배부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하였고, 이는 현행 회계분리기준 제19조(공통자산 및 공통운영비의 배부)제1항에 반영되어 있다. 또한 일반지원자산 관련 기능공통자산 및 기능공통비의 배부에 있어, 선박, 차량운반구, 기타 일반지원자산 등을 그 사용용도에 따라 개별기능별로 할당이 곤란할 경우, 개별기능별 인원수를 기준으로 배부하는 개선안 역시 현행 회계분리기준 제19조 제2항에 반영되어 있다. 무형자산과 관련된 기능공통자산 및 기능공통자산 운영비용을 일반지원기능공통자산 및 일반지원기능공통자산 운영비용의 배부기준을 준용하도록 하는 개선안은 현행 회계분리기준 제19조 제3항에 반영되었다.

역무별 회계분리 관련하여 역무공통 전기통신설비의 분리에 있어서, 교환기능설비, 전송기능설비, 선로기능설비의 배부기준을 취득가액이 아닌 장부가액 비율로 수정하는 개선안이 현행 회계분리기준 제31조(공통 전기통신설비의 역무별 배부)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전원기능설비의 역무공통 배부에 있어서 기존의 교환, 전송, 정보처리기능설비 역무별 장부가액 합계액에다가 단말기능설비의 역무별 장부가액을 합산한 합계액을 배부기준으로 규정하는 개선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토지/건물/건축물의 운영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 기준으로 역무별 면적비율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역무별 취득가액 비율을 사용하도록 하는 개선안이 현행 회계분리기준 제24조(일반지원자산운영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에 반영되어 있다.

(5) 총괄원가관련 회계규정

전기통신 관련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회계분리할 수 있도록 ‘유형자산 처분손실’을 ‘유형자산 처분손익’으로 수정하는 개선안이 현행 회계규정 제14조(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 등의 분류)제2항 및 회계분리기준 제35조(사업비용)에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법인세비용의 역무별 배부에 있어 역무별 영업손익 비율을 기준으로 배부하도록 하는 개선안이 현행 회계분리기준 제30조(영업외비용 공통비의 역무별 배

부)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회계분리기준 제36조 제3항의 투자보수율 산정에 있어서 정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상호접속기준에 의한 투자보수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개선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4.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 개선방안 연구(2005. 12)

2005년 12월의 보고서에서는 회계분리기준의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는데, 주요 연구주제는 인터넷전화 회계분리, 결합판매수익의 회계분리, 회계분리기준 감가상각 방법 변경, 이동망 음성/데이터의 회계분리이다.

〈표 2-8〉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 개선방안 연구(2005. 12)의 주요연구내용 및 정책반영여부

주요 연구 내용	정책 반영 여부
인터넷전화 회계분리	미반영
결합판매 수익의 회계분리	2006년 12월 회계분리기준 개정시 수정 반영
회계분리기준 감가상각 방법 변경	2007년 12월 회계분리기준 개정시 반영
이동망 음성/데이터 회계분리	미반영

가. 인터넷전화 회계분리

2005년 12월 회계분리기준 개정에서 인터넷전화역무가 세부역무의 정의에 추가되어, 인터넷전화의 회계분리를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배부기준을 적용하여 인터넷전화역무를 회계분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지만, 배부기준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내부거래 방식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화역무와 인터넷접속역무의 내부거래 방식을 이용한 회계분리 개선안이 마련되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나. 결합판매 수익의 회계분리

두 개 이상의 상품 및 서비스가 결합된 상품 및 서비스의 수익을 분리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은 그 구성 개별 서비스의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에 의해 결합판매 수익을 해당 상품 및 서비스로 배부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러나 이를 담은 신설조항은 2005년 12월의 회계분리기준 개정시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2006년 12월 개정시에 수정되어 반영되었다(현행 회계분리기준 제12조).

다. 회계분리기준 감가상각 방법 변경

회계분리기준 제8조에 전기통신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규정하는 개선안은 2007년 12월의 회계분리기준 개정에서 반영되었다.

라. 이동망 음성/데이터의 회계분리

본 보고서는 통신위원회의 음성서비스와 데이터서비스를 회계분리하도록 명령한 과거 제52차 통신위원회 시정명령('99. 10)에 근거하여 회계분리 방안을 연구하였다.

5.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한 회계연구(2007. 12)

〈표 2-9〉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한 회계연구(2007. 12)의 주요연구내용 및 정책반영여부

주요 연구 내용		정책 반영 여부
역무통합을 반영한 회계제도 보완	회계분리대상 역무 개정	반영
	세부역무 분류	반영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 분류 세분화	반영
	기간·별정통신 겸영사업자 역무별 회계분리	반영
융합환경에 따른 공동원가 배부방법 개선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 분류 절차 및 방식	미반영
	광동축혼합망의 기능별 분류	반영
	HFC망 및 IP기반서비스의 역무별 원가 배부기준	반영
	약식자료 제출 대상자 확대	미반영

주요 연구 내용		정책 반영 여부
감가상각방법 및 내부거래제도 개선	감가상각방법	반영
	내부거래제도	반영
전기통신사업 회계	회계규정의 목적	미반영
규정 미비점 개선	정보처리설비 및 비통신용 전원 설비 정의	반영
	접속원가산정 대상사업자 자산 세분류 조항 삭제	미반영
	수익 및 비용의 범위 및 정의	영업수익 및 요금수익의 세부계정 명시 개선안 미반영
	역무별 회계분리의 원칙	반영
규정 미비점 개선	자산 및 비용의 기능별 분류 및 배부	전기통신설비 지원기능 자산에서 세부 기능으로 추가분류를 가능하게 하는 개선안 미반영
	역무별 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거래비용과 자가소비사업비용의 배부기준 신설안 미반영 - 일반지원자산의 기능을 세분화할 경우 전기통신설비 배부기준을 준용하도록 하는 개선안 미반영
	역무의 지역별 회계분리 삭제	미반영
	별지서식 및 통계보고 자료 수정	영업통계 및 역무별손익명세서를 역무별손익계산서로 용어를 수정하는 개선안 미반영

2007년 12월의 보고서는 ‘융합에 대비한 개별 행위규제 개선방안 연구(2007. 12)’의 일부분으로 포함되어 발간되었다. 주요 연구 결과는 역무통합을 반영한 회계제도 보완, 융합환경에 따른 공동원가 배부방법 개선, 감가상각방법 및 내부거래제도 개선, 전기통신사업 회계규정 미비점 개선 등이다.

가. 역무통합을 반영한 회계제도 보완

(1) 회계분리대상 역무 개정

역무통합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회계분리대상역무를 기간통신역무 3개 역무 및 부가통신역무로 규정하는 개선안이 현행 회계규정

제4장 역무별 회계분리의 제16조(역무의분류)에 반영되었다.

(2) 세부역무 분류

회계분리 대상 역무를 전송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회선 설비임대 역무, 부가통신역무의 4역무로 수정하고, 전송역무에 기존의 전화역무, 인터넷접속역무, 인터넷전화역무, 기타전기통신역무에 포함되던 기간통신역무인 가입 전신역무를 세부역무로 포함하는 개선안이 현행 회계분리기준 제3조(세부역무의 정의)에 반영되었다.

(3) 인터넷가입자 접속서비스 분류 세분화

기존의 인터넷 가입자접속서비스를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와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로 구분하는 개선안이 현행 회계분리기준 제3조제1호에 반영되었다.

(4) 기간·별정통신 겸영사업자 역무별 회계분리

기간·별정통신 겸영사업자의 역무별 회계분리시 별정통신사업을 기간통신역무로 회계분리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개선안이 현행 회계분리기준 제3조에 반영되었다.

나. 융합환경에 따른 공통원가 배부방법 개선

(1)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 분류 절차 및 방식

회계분리기준 제4조(회계분리의 절차)의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 간 분류를 수행한 후 전기통신사업의 자산등을 대상으로 형태별 분류와 기능별 분류를 수행하도록 개정하고,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의 분류 기준도 제6조로 조항을 변경하여 형태별/기능별 분류 이전에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며,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가장 합리적인 배부기준을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2) 광동축혼합망의 기능별 분류

전송설비와 선로설비의 기능별 분류에 광동축혼합망의 구분 필요성에 따라 이에 대한 신설안이 회계분리기준 제13조(전기통신설비의 기능별 분류)제1항에 반영되었다.

(3) HFC망 및 IP기반서비스의 역무별 원가 배부기준

광동축혼합망의 광송수신기로부터 가입자단 분배기까지 구간의 전송운영공통비

를 전기통신역무와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에 각각 동일한 비율로 배부하도록 수정하고, 이후 개별 인터넷기반서비스 원가분리는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과 분리된 전기통신역무의 원가부분을 사용량 또는 대역폭에 의해 분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광동축 혼합망의 가입자단 분배기 이후부터 가입자 단말장치까지의 선로운영공통비 및 선로기능설비는 운영중인 회선수를 기준으로 하되, 복수의 서비스에 사용되는 경우 전기통신역무와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에 각각 동일한 비율로 배부하도록 하여 운용회선수를 산정하도록 수정하였다. 이후 개별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원가분리는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과 분리된 전기통신역무의 원가부분을 사용량 또는 대역폭에 의해 분리하도록 하였다.

기존 회계분리기준에서 광동축혼합망의 가입자단분배기 이후부터 가입자단말장치까지의 선로운영공통비 및 선로기능설비중 가입자선로의 역무별 배부에 있어 복수의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경우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고, 배부기준으로 규정된 형태별 가액을 기능별 가액으로 수정하였다.

이상의 내용이 담긴 개선 및 신설안이 현행 회계분리기준 제23조(전기통신설비운영공통비의 역무별 배부) 및 제31조(공통 전기통신설비의 역무별 배부)에 반영되었다.

(4) 약식자료 제출대상자 확대

약식보고서 제출 사업자를 ‘단일기간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서비스의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지 않으며, 연간 기간통신서비스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사업자’에서 ‘연간 기간통신서비스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사업자’로 수정하는 개선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다. 감가상각방법 및 내부거래제도 개선

(1) 감가상각방법

회계분리기준에서 전기통신설비 및 일반지원자산 등의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통일하고, 전송설비의 내용연수를 실질적인 내용연수를 반영하여 6년에서 8년으로 수정하며, 또한, 부칙에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관한 내용은 개정 고시가 최초 적용되는 회계연도의 신규자산 취득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이 현

행 회계분리기준 제8조(감가상각방법)에 반영되었다.

(2) 내부거래제도

전송역무 및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의 서비스간 내부거래만 인식하도록 하고, 특정 사업자가 불가피하게 전송역무 및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의 서비스간이 아닌 다른 형태의 내부거래가 필요한 경우 회계분리기준 제6장 보칙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규정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므로 특수한 형태의 내부거래는 이를 통하여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이 현행 회계분리기준 제10조(내부거래의 인식)에 반영되었다.

라. 전기통신사업 회계규정 미비점

(1) 회계규정의 목적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2 회계정리뿐만 아니라 제62조 통계보고에 필요한 사항임을 명시하는 개선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2) 정보처리설비 및 비통신용 전원설비 정의

정보처리설비를 ‘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처리하는 장치와 부대설비’로 수정하는 개선안이 현행 회계규정 제8조(사용중인 전기통신설비의 분류)에 반영되었다. 또한 비통신용 전원설비를 일반지원자산의 건물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선안 역시 현행 회계규정 제9호(사용중인 일반지원자산의 분류)에 반영되었다.

(3) 접속원가산정 대상사업자 자산 세분류 조항 삭제

접속원가산정을 위한 회계분리기준상의 조항(제14조 및 제41조의 회계분리지침서 제출관련 조항)은 모두 삭제하고 상호접속기준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개선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4) 수익 및 비용의 범위 및 정의

회계규정상의 전기통신사업 영업수익을 요금수익, 접속료수익, 국제정산수익, 보편적역무손실보전수익, 기타영업수익, 내부거래수익, 자가소비사업용수익으로, 영업비용을 인건비, 경비, 설비사용료,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액, 대손상각비,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 국제정산부담금, 접속료, 내부거래비용, 자가소비사업용비용으로

영업외비용등을 출연금, 유형자산처분손익, 보편적역무손실보전비용, 법인세비용으로 규정하는 개선안이 현행 회계규정 제13조(영업수익의분류) 및 제14조(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 등의 분류)에 반영되었다.

또한 대손상각비를 청구·수납비용에서 별도로 분리할 수 있도록 형태별 분류의 항목으로 명시하는 개선안이 현행 회계분리기준 제9조제3항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영업수익 및 요금수익의 세부계정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는 개선안이 반영되지 않았다.

(5) 역무별 회계분리의 원칙

사업자는 자산, 비용 및 수익의 인위적 배분 및 측정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계분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개선안이 현행 회계규정 제15조(역무별회계분리의 원칙)에 반영되었다.

(6) 자산 및 비용의 기능별 분류 및 배부

전기통신설비 지원기능 자산에서 추가적으로 세부기능으로 분류가 가능할 경우 분류하도록 하는 개선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설비사용료를 인건비, 경비와 마찬가지로 기능별 분류를 수행하도록 수정하고, 무형자산상각액을 일반지원자산등의 기능별 분류를 준용하도록 수정하는 개선안이 현행 회계분리기준 제17조(전기통신영업비용의 기능별분류)에 반영되었다.

일반지원자산과 관련된 기능공통자산 및 기능공통비는 일반지원기능공통자산 및 일반지원기능공통자산 운영비용으로 문구를 수정하고, 무형자산과 관련된 전기통신공통설비 자산 및 전기통신공통설비 운영비는 무형자산과 관련된 기능공통자산 및 기능공통자산 운영비용으로 문구를 수정하며, 일반지원기능공통자산 및 일반지원기능공통자산 운영비용의 배부를 준용하도록 수정하는 개선안이 현행 회계분리기준 제19조(공통자산 및 공통운영비의 배부)에 반영되었다.

(7) 역무별 배부

기타 영업비용 공통비의 배부에 있어서 설비사용료 대손상각비 및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의 공통비에 대한 배부기준에 대한 신설 또는 개선안이 현행 회계분리기준 제29조에 반영되었으나, 내부거래비용과 자가소비사업용비용의 배부기준을 신설하

는 개선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일반지원자산의 전기통신설비 지원기능자산의 역무별 배부에 있어 토지, 건물, 구축물은 역무별 전기통신기능설비 면적비율, 다만, 역무별 면적비율이 어려운 경우 전기통신설비의 역무별 장부가액 비율,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게 하고, 기타 일반지원자산은 전기통신설비의 역무별 장부가액 비율,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는 개선안이 현행 회계분리기준 제32조(공통 일반지원자산의 역무별 배부)에 반영되었으나, 기능을 한 단계 더 세분화한 경우에 전기통신설비의 배부기준을 준용하여 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8) 역무의 지역별 회계분리 삭제

지역별 회계분리는 사문화되었으므로 회계규정 제18조(역무의 지역별 회계분리) 및 회계분리기준 제5장 역무의 지역별 회계분리를 삭제하는 개선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9) 별지서식 및 통계보고 자료 수정

정보의 유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의 복잡한 별지서식의 수정안이 현행 회계분리기준에 일부 반영되었다. 그러나 회계분리기준 제47조(통계의 보고) 및 제48조(보고서 등의 공개)의 ‘영업통계’와 ‘역무별 손익명세서’를 ‘역무별 손익계산서’로 수정하는 개선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제 3 장 회계제도 개선 방안

제 1 절 단기 개선 이슈

1. 별정사업자 회계보고 의무

가. 현황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간의 차등 해소를 위해 상호접속, 보편적역무, 출연금, 이용약관 등 각 부문별로 별정사업자에게 권리 및 의무부여를 검토하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하 ‘사업법’이라 함) 제36조의2(회계정리) 제1항에 의하면 기간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를 정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기간통신사업자에게는 회계보고 의무가 있으나, 별정통신사업자에게는 회계보고 의무 조항이 없다. 별정통신사업자에게도 회계분리의무를 부과할 것인가를 검토한다.

(1) 전기통신사업과 사업자의 구분

제36조의2(회계정리) 제1항에 의하면 기간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사업법 제4조에 의하면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상기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모두를 전기통신사업자라고 하며, 수행하는 사업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 예를 들면,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별정통신사업자임과 동시에 전기통신사업자가 된다.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전기통신역무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반면에 별정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구분된다. 부가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 기간통신사업자와 회계보고 의무

기간통신사업자는 사업법 제3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를 정리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전년도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대통령령 제20663호인 회계규정 제3조에 의하면 회계정리 혹은 전기통신사업회계의 목적은 전기통신역무 원가의 산정, 전기통신설비 간 상호접속료·설비제공대가의 산정,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 역무간 상호보조행위 등 전기통신사업의 공정경쟁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계분리기준 제42조(보고서의 제출) 제3항에 의하면 기간통신사업자 중 단일기간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간 기간통신서비스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별지 제1호와 제2호인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전기통신사업의 회계분리는 규제 목적상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제도로 모든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사업자에게는 별지 제1호(대차대조표)와 별지 제2호(손익계산서)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역무별 회계분리를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

(3) 회계정리 목적의 재조명과 회계정리 의무

전기통신사업회계의 목적은 회계정리 제3조가 규정한 바와 같이 역무 원가 산정, 접속료 산정, 대가의 산정, 손실금 산정 및 상호보조행위 판단 등을 위한 것이다. 회계정리에 의한 회계정보로 전기통신역무 원가를 산정한다는 것은 역무의 원가를 전기통신정책에 활용한다는 것일 것이다. 예를 들면, 전기통신역무 요금의 적정 여부를 판단함에 이용될 수 있다고 본다. 정부가 접속료를 산정한다면 접속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회계정보가 필요할 것이다. 만약 접속료가 사업자간의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면 규제기관에게 회계정보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설비제공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설비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설비에 대한 회계정

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손실금을 보전 받는 사업자의 회계정보도 필요하다. 상호보조행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호보조행위를 감행할 환경이 높은 사업자에 대하여 회계분리를 하여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분리기준이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사업자에게는 역무별 회계분리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나, 사업법은 모든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회계정리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회계정리에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든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회계정리 특히 회계분리의무를 부과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된다. 회계정리의 목적에 따라 해당 되는 사업자만을 지정하는 것이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규제비용을 축소할 수 있고,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함에 도움이 된다.

나. 해외 사례

(1) 일본

2004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24조(회계정리)에 의하면 회계정리의 목적은 기초적 전기통신역무 또는 지정전기통신역무의 요금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기초적 전기통신역무 또는 지정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회계정리의무를 부과하여, 총무성령에 의한 전기통신사업회계규칙에 따라 회계정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법 제30조(금지행위 등) 제5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기통신사업자¹⁾ 및 제33조 제2항에 규정된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전기통신사업자도 총무성령에 의한 전기통신사업회계규칙에 따라 회계정리의무를 부과 받는다.

국민생활에 불가결하기 때문에 일본전국에 공평하게, 적절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전기통신역무인 기초적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2007년 3월 현재 NTT동서, CATV전화사업자 등 19개사이다. 필수설비를 소유한 전

1) 제34조 제2항이 규정한 제2종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전기통신사업자중 총무성령이 정한 기준(매출액 기준 시장 점유율 등)에 해당되는 사업자

기통신사업자가 동 설비를 사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하여 대체적인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전기통신역무인 지정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NTT동서이다. 사업법 제30조에 의한 금지행위 등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NTT동서, NTT도코모 등 11개사이다. 즉, 일본은 규제목적에 해당되는 사업자를 법에 의하여 지정하고, 동 사업자에게만 회계정리의무를 부과하였다. 다시 말하면 법에 의하여 회계정리를 부여 받지 않은 사업자는 회계정리의무가 없다.

(2) 영국

영국 및 유럽연합국가는 2002년 유럽연합이 제정한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규제제도 확립을 위하여 공포한 지침서에 따라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을 분석하여 경쟁상황이 유효적이지 못한 경우 시장지배력을 가진 지배적사업자를 지정하고 회계분리의무 등 여러 가지의 의무를 부과한다.²⁾ 따라서 영국을 포함한 유럽연합국가들은 시장지배적사업자에게만 회계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영국은 유럽연합의 새로운 규제틀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3년 통신법을 제정하였으며, 동 법 제87조(6)항(b), (7)항 및 (8)항이 회계분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Ofcom은 통신법에 근거하여 2004년 7월 22일 BT와 Kingston Communications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는 영업보고서 기준을 발표하였다. Ofcom은 지속적으로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을 평가하면서 필요시 영업보고서 기준을 변경한다. BT와 Kingston Communications는 Ofcom기준에 따라 영업보고서(Regulatory Financial Reporting)와 회계지침서(Accounting Documents)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3) 미국

1934년 통신법 219조에 의해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가 제정한 47 CFR Part 32(Uniform System Accounts for Telecommunications Companies)의 제11

2) 유럽위원회는 소매시장 7개와 도매시장 11개를 규제가 필요한 시장으로 회원국에 추천하였다.

조에 의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회계를 정리하여 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회계 정리를 하여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1934년 통신법 251(h)가 정의한 시내전화사업자(ILEC)³⁾와 FCC가 기준에 의하여 지정한 전기통신사업자이다. 그러나 통신법 251(h)(1)(B)(ii)에 의하여 정의된 상기 시내전화사업자의 승계자 혹은 양수인으로 지배적 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적용대상사업자가 아니다.

규제대상 전기통신서비스의 매출액이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시내전화주식회사는 규제대상 전기통신서비스에서 연간 1억 달러 미만의 수익이 발생하는 시내전화주식회사보다는 세분화된 계정과목으로 기록된 대차대조표와 손익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호주

The Trade Practices Act 1974의 151BU에 의하여 ACCC는 2001년 5월 Telecommunications Industry Regulatory Accounting Framework(RAF)을 제정하여 전기통신사업자들로 하여금 회계정리를 하도록 하였다. 2003년 10월 환경변화에 따라 상기의 기준을 수정하였다.

적용대상 전기통신사업자는 Telstra를 비롯하여 Optus, Primus, Vodafone, AAPT이다. 사업자들은 핵심 보고서(Core report)와 사용보고서(Usage report)를 제출하여야 한다. 핵심 보고서는 자본조정된 손익계산서(Capital Adjusted Profit and Loss Statements), 투자자본명세서(Capital Employed Statements), 고정자산명세서(Fixed Asset Statements), 가중평균자본비용보고서(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Report)로 구성되어 있다. 이용보고서는 서비스이용보고서(Service Usage Reports), 주요네트워크자산이용보고서(Key Network Usage Report)로 구성되어 있다.

3) 1996년 통신법 제정일 현재 그 지역에서 시내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내전화사업자, 제정일 현재 47 CFR 69.601(b)에 따라 전화교환사업자 협의의 구성원인 것으로 간주되거나, 제정일 이후 사업자 협의의 구성원의 승계자 또는 양수인인 시내전화사업자.

다. 전문가 의견

(1) 경희대학교 강병민 교수

권리와 의무 측면에서 기간사업자와 별정사업자간 차등화가 대폭 해소되고 결합 판매가 활성화되는 상황 하에서, 별정사업자의 행위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에 따라 정부가 서비스별 원가정보가 필요하다면 별정사업자에 대한 회계분리의 무 면제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기간사업자 또는 별정사업자 간의 구분 없이 일정한 회계분리의무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2) 대주회계법인 오충한 회계사

별정사업자의 매출규모를 기준으로 기간사업자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별정사업자 중 일정규모 이상으로서 기간사업자와의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사업자의 경우 기간사업자와 유사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기간사업자와 동등한 대우(혜택)는 주로 상호접속, 설비제공, 중계접속을 허용하고 기존 별정사업자의 이용약관에 의한 접속료/설비제공대가정산이 아닌 원가기반 접속료 정산, 기간사업자간의 감면된 설비제공요금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혜택에 대한 반대급부로 별정사업자에게 보편적역무손실분담, 출연금분담범위확대, 회계분리의무 부과, 이용약관 신고절차 추가 등의 기간사업자와 같은 의무부과가 가능하다.

장점으로는 통신망의 광대역화, All-IP에 따른 서비스 융합화되는 통신환경에서 규모에 따른 사업자간 형평성 있는 권리제공 및 의무부과를 통하여 시장활성화, 경쟁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별정사업자에 대한 획일적인 의무부과는 영세한 사업자에게 혜택보다는 의무만이 부과되어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3) 안진회계법인 박언용 회계사

기본적으로 회계분리는 기간통신사업자중에서도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적용범위를 판단하기 위해서 과거 3~5개년간의 영업보고서 이용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별정사업자에게도 회계분리의무를 부여는 긍정적이지 않다고 사료된다.

라. KISDI 의견

전기통신사업회계는 전기통신사업의 공정경쟁과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재 모든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그들이 제공하고 있는 모든 역무에 대하여 회계정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회계정리의무를 부과하기 이전에 전기통신사업에서의 공정경쟁을 유지하기 위하여 규제하여야 하는 서비스 혹은 역무가 무엇인가를 조사하고, 동 서비스 시장에서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유용한 회계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얻을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해외의 경우, 보는 바와 같이 규제목적이 필요한 서비스 혹은 역무를 먼저 규정을 하고,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높은 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배적인 사업자에게만 회계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회계의무를 부과할 사업자를 결정하고, 해당되는 모든 사업자에게 회계의무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공정경쟁이 필요한 시장을 규정하고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회계정리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를 방지하고 공정경쟁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별정통신사업자에게 회계정리의무를 부과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의미가 없다. 별정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이 커서 동 서비스 시장에서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하면 동 별정통신사업자에게 회계분리 의무를 부과하면 된다. 즉, 회계정리 의무 부과 여부는 사업자의 종류가 아니라 서비스 시장에서의 사업자의 영향력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2. 판매촉진비 상한 규정

일반적으로 기업 활동을 생산활동, 판매활동, 관리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3가지 활동은 모두 중요하며, 또한 3가지 활동을 조

화롭게 수행하여야 한다. 3가지 활동의 균형점은 사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동일한 사업 속에서도 기업의 사업전략에 따라 상이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균형점으로 수렴할 것으로 사료된다.

만약 기업이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하여 과도한 판매촉진비를 사용한다고 하면 다른 기업들도 시장점유율을 방어하기 위하여 과도한 판매촉진비를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과도한 판매촉진비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회계분리기준 제35조 제2항 3의 가에서 “필요한 경우 판매촉진비의 상한선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상한선을 정하지 않았다. 이에 동 기준조항에 대하여 재검토한다.

가. 현황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2(회계정리) 제1항은 기간통신사업자는 회계규정에 의하여 회계를 정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회계규정은 전기통신사업회계의 목적을 “전기통신역무 원가의 산정,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료·설비제공대가의 산정,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 역무간 상호 보조행위 등 전기통신사업의 공정경쟁과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회계규정 제4조(전기통신사업회계의 원칙) 제2항, 제16조(역무의 분류) 제2항, 제17조(영업비용 등의 역무별 분리) 및 제19조(보고서의 제출 등) 제2항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의 회계정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전기통신역무의 세부부류, 역무별 회계분리 및 영업보고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계분리기준은 유형자산·무형자산·영업수익·영업비용 및 영업외비용을 역무별로 회계분리하는 방안을 규정하여야 하는 제4장 역무별 회계분리에서 역무의 원가를 산정함에 필요한 총괄원가(제34조), 사업비용(제35조), 투자보수(제36조)를 규정하고 있다.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계분리기준의 목적은 전기통신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재무상의 자료를 회계원칙에 의하여 처리하고, 회계처리

된 회계정보를 세분류된 세부역무로 분리하여 정하여진 표준양식에 의하여 보고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부역무의 원가 산정에 필요할 수 있는 제34조(총괄원가), 제35조(사업비용) 및 제36조(투자보수)는 전기통신사업의 회계를 정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분리기준에서는 제외되어야 하는 조문이다.

나. 전기통신 서비스의 요금산정기준

상호접속료,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공동활용대가 및 설비제공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규제당국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이하 ‘접속기준’이라 함)”,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이하 ‘보편기준’이라 함)”,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이하 ‘가입자선로기준’이라 함)” 및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이하 ‘설비제공기준’이라 함)”을 제정하였다.

상기 기준은 회계규정과 회계분리기준에서 산출된 회계정보를 재정의하여, 각 기준이 산정하려고 하는 대가산정의 원가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접속료기준은 영업비용중 접속에 필요한 영업비용을 재정의 하였으며, 보편기준은 소요비용을 판매촉진비를 제외한 영업비용으로 재정의 하였다. 이와 같이 회계규정과 분리기준에 의하여 회계 정리된 회계정보를 각 기준에 맞도록 비용을 원가화 하였다.

따라서 서비스 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원가범위를 규정하는 기준을 분리기준과는 별개로 제정하여야 한다. 서비스 원가정보는 서비스 요금에 기초가 되기 때문에 서비스 원가범위를 규정하는 기준은 가칭 “전기통신 서비스 요금 산정기준(이하 “요금기준”이라 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요금기준은 다른 기준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분리기준에서 회계 처리된 영업비용의 원가 인정 범위를 규정할 수 있다.

다. 요금산정기준의 목적

회계규정과 회계분리기준이 제공하는 회계정보를 이용하여 접속기준은 기준이 정한 서비스의 접속통화료, 보편기준은 보편적 역무 손실금, 가입자선로기준과 설비제공기준은 전기통신설비의 활용과 제공에 따른 대가를 산정한다. 그러므로 요금기준

도 무슨 서비스의 원가를 산정하여, 어떤 규제를 위하여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규정하여야 한다.

요금기준 제정은 서비스 원가를 산정하여, 원가를 기초로 하여 규제당국이 요금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이용약관을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예외적으로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역무의 경우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고 하는자는 사업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요금산정의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금기준을 제정하라고 하면 기준에 의하여 요금산정 근거자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신고는 인가와 다르게 규제기관으로부터 신고내용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요금기준의 원가범위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만약 요금이 원가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결정이 된다면 인가의 경우 원가기준의 원가범위에 의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2007년 고시된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7-28호(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 역무와 기간통신사업자)에 의하면 시내전화서비스에 (주)KT, 이동전화서비스에 SK텔레콤(주), 인터넷접속서비스에 (주)KT이다.

요금산정기준의 목적은 사업법 제29조에 의한 이용약관을 신고 또는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요금산정 근거자료의 작성 지침서가 되며, 동시에 사업자가 제출한 근거자료의 적정성 판단기준도 될 것이다.

라. 원가의 범위와 적정성

접속기준, 보편기준, 가입자선로기준 및 설비제공기준은 산정하고자 하는 대가 산정에 포함될 원가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원가범위에 포함된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규정은 없다. 접속기준은 접속원가를 접속영업비용과 투자보수의 합으로 규정했으며, 보편기준은 소요비용의 범위를 판매촉진비를 제외한 영업비용, 전기통신관련 유형자산처분손익 및 기준자산에 대한 투자보수의 합으로 규정하였다. 즉, 특정한 비용항목의 원가범위 포함 여부만을 규정하였지, 포함이 되는 특정한

비용항목의 적정성을 기준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특정한 비용항목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발생한 혹은 미래에 발생할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은 다양한 각도에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판단 기준을 문서화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다. 때문에 사업법 제29조(이용약관 신고 등) 제1항도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공급비용, 수익, 비용·수익의 역무별 분류, 역무제공방법에 따른 비용절감, 공정한 경쟁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요금산정을 규정하였던 일본의 경우 요금은 효율적인 경영에 있어서 적절한 원가에 적절한 보수를 더한 총괄원가를 기초로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⁴⁾ 또한 원가의 범위를 영업비, 감가상각비 및 제세공과금의 합이라고 정의하였지만, 원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원가의 적정성의 판단은 이용약관인가 여부를 판단할 때 규제당국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법문화한 예는 없다.

판매촉진비의 적절한 규모를 규정한다면, 왜 판매촉진비만 규정하려고 하는가? 판매촉진비를 제외한 다른 비용들은 과도하게 지출하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는가? 비용만 문제가 되는가? 투자보수를 산정하는 기준자산은 과도하게 투자된 것은 아닌가? 등 모든 원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의심하고 적정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때문에 적절한 원가 혹은 합당한 원가로 표현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적정 혹은 합당한 기준을 제시 못하고, 요금을 인가하는 단계에서 경우에 따라 지침서 수준의 기준으로 적정성 혹은 적합성에 따라 인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⁵⁾ 요약하자면, 목적에 따라서 원가의 범위를 다양하게 규정할 수 있으나, 일단 범위에 속한 원가의 적정성을 규정하기에는 다양한 판단기준으로 인하여 법조문할 수는 없으며, 인가 단계에서 원가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된다.

4) 우정성, “전기통신요금산정요령”, 1986. 3. 17

5) 세법에서는 접대비의 손금인정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접대비는 기업운동을 위하여 필요하지만, 과도하게 지출되고 임직원의 사적비용으로 유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판매촉진비의 적정성과 범위

판매촉진비는 광고선전비와 광고선전비이외의 판매촉진비로 구분된다. 광고선전비는 서비스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와 선전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다. 광고선전비 이외의 판매촉진비는 서비스 이용 증진과 가입자 유치 및 확대 등 판매촉진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이다. 즉, 전기통신사업은 가입자가 원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역무를 인지하게 하고, 신청하게 하는 활동을 함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영업비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판매촉진비 계정이 정의하고 있는 활동들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활동이며, 판매촉진비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때문에 판매촉진비의 상한선을 정하여 판매촉진비 지출을 제한한다는 것은 기업의 정당한 판매활동을 제한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판매촉진비의 규모는 시장 현황에 따른 공급자인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시장 혹은 소비자의 수요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때문에 “과도한” 판매촉진비의 과도함을 객관적으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이 수행한 판매촉진활동이 법적으로 공정경쟁을 해치는 활동이며 인정되지 않는 활동이라면, 이와 같은 판매활동은 회계적인 측면이 아닌 행위규제에 의하여 처리되고, 지출된 비용은 처리된 결과에 따라 영업비용으로의 인정 등을 회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바. 해외 사례

판매촉진비의 상한을 두는 해외 사례는 없다. 이하에서는 해외에서 판매촉진 관련 비용을 어떤식으로 분류하여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해외에서는 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나 SMP(Significant Market Power)보유 사업자에 한해서 회계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영업보고서와 같은 형식의 보고서를 찾기가 어렵다. 따라서 재무회계상의 재무제표인 손익계산서를 통하여 판매비의 수준을 볼 수 있다. 대부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하나의 항목으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촉진비만을 구분할 수 없었다.

(1) 일본

2004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24조(회계정리), 동법 제30조(금지행위 등) 제5항에 의하여 지정된 전기통신사업자⁶⁾ 및 제33조 제2항에 규정된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전기통신사업자는 총무성령에 의한 전기통신사업회계규칙에 따라 회계정리의무를 부과 받는다.⁷⁾

회계정리의무 부과 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에는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손익계산서가 있다. 손익계산서에는 비용이 세분화 되어 있으며, 판매영업기능비용에 해당되는 “영업비”계정이 있다. 영업비는 창구, 요금, 판매 및 기타 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 구분되나 세부적인 내용 및 내역은 요구되지 않는다. 또한 사업자는 회계정리 의무가 있는 역무에 대하여 손익명세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영업수익, 영업비용 및 영업이익 금액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세부명세표가 아니라 역무에 대한 세부명세표이다.

(2) 영국

영국은 유럽연합의 새로운 규제 틀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3년 통신법을 제정하였으며, Ofcom은 통신법에 근거하여 2004년 7월 22일 BT와 Kingston Communications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는 영업보고서 기준을 발표하였다. BT와 Kingston Communications는 Ofcom기준에 따라 영업보고서(Regulatory Financial Reporting)와 회계지침서(Accounting Documents)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BT는 시장지배력이 있다고 판정된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에 대한 회계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BT는 소매시장에 속해있는 서비스의 손익계산서와 서비스 제공에 투입된 평균투자자본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소매시장에 대한 손익계산서에는 판매활동과 관련된 비용항목은 판매영업기능비용에 해당되는 ‘Marketing & Sales’계정이

6) 제34조 제2항이 규정한 제2종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전기통신사업자중 총무성령이 정한 기준(매출액 기준 시장 점유율 등)에 해당되는 사업자

7) 기초적전기통신역무 제공사업자 19개사, 지정전기통신역무 제공사업자 NTT 동서 및 금지행위 등 규정의 적용을 받는 11개사가 회계정리 의무를 가진다.

있으며, 동 계정을 세분화하지 않았다.

(3) 미국

1934년 통신법 219조에 의해 통신위원회가 제정한 47 CFR Part 32(Uniform System Accounts for Telecommunications Companies)의 11조에 의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회계를 정리하여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FCC에 보고하여야 한다. 회계 정리를 하여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ILEC과 FCC가 기준에 의하여 지정한 전기통신사업자이다.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이 세분화되어 있다. 판매영업기능비용을 회계처리하는 계정으로 “Marketing”계정이 있으며 Marketing 계정은 다시 “Product Management”, “Sales”와 “Product advertising”계정으로 세분화된 다. Class B 회사는 집합계정인 “Marketing”계정으로 회계처리하면 되고, Class A 회사는 세분화된 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⁸⁾

(4) 호주

The Trade Practices Act 1974의 151BU에 의하여 ACCC는 2001년 5월 Telecommunications Industry Regulatory Accounting Framework(RAF)을 제정하여 전기통신사업자들로 하여금 회계정리를 하도록 하였다. 2003년 10월 환경변화에 따라 상기의 기준을 수정하였다.

적용대상 전기통신사업자는 Telstra를 비롯하여 Optus, Primus, Vodafone, AAPT이다. 사업자들은 핵심 보고서(Core report)와 사용보고서(Usage report)를 제출하여야 한다. 핵심 보고서는 자본조정손익계산서(Capital Adjusted Profit and Loss Statements), 투자자본명세서(Capital Employed Statements), 고정자산명세서(Fixed Asset Statements), 가중평균자본비용보고서(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Report)로 구성되어 있다. 이용보고서는 서비스이용보고서(Service Usage Reports), 주요네트워크자산이용보고서(Key Network Usage Report)로 구성되어 있다.

자본조정손익계산서 비용항목은 “Organization”, “Product and Customer” 및 “Network

8) Class A 회사는 매출액이 1억불 이상인 회사이며, Class B 회사는 1억불 미만인 회사이다.

Expenses”로 구분되며, 판매영업기능비용을 회계 처리하는 계정은 “Product and Customer”에 속하며 “Marketing”과 “Sales”계정으로 구분되어 있다. 다른 국가의 손익계산서와 달리 호주의 자본조정손익계산서는 소매와 도매를 모두 포함한 서비스별 운영비용과 자본비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해외사례를 요약하면,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판매활동에 대한 회계처리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판매촉진비의 규모 혹은 적정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회계 관련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기준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해외의 회계규정들은 유선전화사업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논란이 있는 판매촉진비 상한선 설정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사. 전문가 의견

(1) 대주회계법인 오충한 회계사

판매촉진비 상한을 설정하게 되면 요금인가 대상역무사업자에게는 상한설정대상 비용항목의 지출을 제한하게 하므로 과당경쟁을 통한 해당비용의 소비전가를 억제하여 소비자후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요금인가 대상역무사업자 이외에 대한 비용지출규제는 규제의 실익은 없이 규제의 비용만 유발하므로 과잉규제라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판촉비 상한의 장·단점과 규제의 목적을 고려해볼 때, 상한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페널티가 주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판매촉진비 상한의 기준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해당역무의 매출액의 일정률로 정하는 것이나 다만 법인세법과 같이 기업내의 접대비 등 불건전한 요소가 있을 수 있는 비용의 지출을 제한하기 위해 일정금액까지는 정액으로 하되 그 이상을 초과하는 한도는 매출액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 또한 상한설정 대상 비용의 범위의 결정에 있어서는 특정비용의 지출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특정비용의 정의가 매우 중요하므로 구체적이며 실용적인 비용 정의가 선행되어야만 규제의 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회계분리기준(제35조 2항 3호)과

같이 현실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무적으로 적용가능한 단일계정비용(판매촉진비)을 정의하여야 한다.

위의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판매촉진비 상한규정이 포함된 회계분리기준 제35조제2항은 영업비용의 범위를 제한적으로만 기술하고 있어 영업비용 범위에 대한 엇갈린 해석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영업비용의 범위를 열거하는 방식보다 영업비용의 한도를 정하는 방식으로의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 안진회계법인 박언용 회계사

판매촉진활동이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판매촉진비 상한이 설정되면 기업은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기존의 판매촉진활동을 지속할 수 있으므로, 상한 규제가 판매촉진활동의 유인을 제거 또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판매촉진비 상한의 적용 대상은 사업자의 규모나 경쟁력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되, 마케팅비용 지출이 과다한 서비스부문을 선정하여 그 적용을 가급적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상한설정 대상비용의 범위는 판매촉진비 전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행 회계분리기준에서 판매촉진비 상한을 규정하는 것은 사업자로부터 규제 등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 보고하게 하는 회계분리기준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하다. 따라서 판매촉진비만을 인위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요금인가시 판매촉진비를 어떤 방식으로 연관지어 처리할 것인지를 사업자에게 명확히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판매촉진비 지출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아. KISDI 의견

회계분리기준은 전기통신사업의 공정경쟁과 관련한 사항인 역무의 원가, 상호접속요율,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설비대가 산정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호접속요율 산정 등과 같이 역무의 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원가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분리기준이 아닌 별개의 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역무의 원가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경우는 요금산정이다. 따라서 요금산정기준을 제정하여 원가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요금산정기준은 이용약관 작성 시 기초가 될 것이며, 또한 요금 인가사업자의 이용약관 인가를 위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접속기준 등과 같이 역무의 원가범위를 정할 수 있으나, 정하여진 비용의 적정성을 규정하여 비용의 일부만을 원가로 인정하는 기준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우며, 이와 같이 생산된 원가정보로 서비스 요금의 적정성을 판단하기에는 판단기준이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법조문화 할 수 없으며, 이용약관을 심사하는 단계에서 판매촉진비 뿐만 아니라 다른 비용까지도 적정성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현행 회계분리기준의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는 회계분리기준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별표도 조정되어야 한다. 판매촉진비와 같이 사업자가 시장점유율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도하게 지출하는 경우 비용의 적정성 보다는 판매활동에서 야기되는 부당행위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정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사료된다. 시장을 통해 판매촉진비를 규제하기 어려워 인위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면, 그 동안 사업자들이 지출한 판매촉진비의 규모 등을 참조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단말기보조금 회계처리

가. 현황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4는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지원금(이하 ‘단말기보조금’)을 허용하고 있다. 이동 3사는 최근 일정기간 이용 약정을 한 가입자에 대해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기간약정 단말기 보조금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사업자간 이견이 있었으며 금융감독원은 질의회신 형식으로 의견을 발표하였다. 전기통신회계 입장에서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나. 법적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4는 기본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의 지급을 금하고 있지만, 일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다. 허용되는 경우는 18개월 이상의 기간약정 이용자인 경우와 기간통신역무 개시 6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이다. 따라서 검토의 대상인 18개월 이상 기간약정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단말기 보조금은 허용된다고 사료된다.

현행 회계분리기준 제17조는 통신단말장치의 구입 지원 비용을 판매영업기능비용으로 분류하여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회계분리기준 제17조의 통신단말장치의 구입지원금을 규정할 당시에는 기간약정 단말기 보조금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 당시에는 기간약정이 없는 일반적 단말기 보조금만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기간약정 단말기 보조금의 통신회계에서의 처리 방안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다. 해외 사례

전기통신회계제도에서 재무회계와 다르게 기간약정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규정한 해외사례는 없다. 전기통신회계도 재무회계의 결과를 바탕으로 회계정보를 생산하기 때문에 재무회계에서의 기간약정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 해외사례를 살펴볼 필요는 있다. 따라서 본 해외사례는 전기통신회계에서의 내용이 아니라 일반보고 목적의 재무회계에서의 회계처리 사례임을 밝혀둔다.

해외 주요통신사업자의 단말기보조금 회계처리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 <표 3-1>과 같이, 미국의 경우, US-GAAP에 의해 단말기보조금을 의무약정기간 동안의 단말기 매출원가로 인식하고 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의 경우 IFRS에 근거하여 발생기간의 당기비용으로 인식하나, 자산 인식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자산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표 3-1〉 해외 주요 통신사업자의 단말기보조금 회계처리 방법

회사	회계기준	회계처리방법
Cingular wireless LCC (미국)	US-GA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말기를 취득원가 이하로 판매시 고객과 1년 또는 2년 약정, 단말기 매출을 고객으로부터 수령하는 금액으로 계상하는데 이는 보조금을 매출에게 차감하는 것임 ▶ (홈페이지)해지시 위약금(2년 약정)은 \$175에서 시작, 약정기간 동안 매달 5\$씩 감소함
Verizon Wireless (미국)	US-GA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자의 초기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 단말기 매출을 고객으로부터 수령하는 금액으로 계상하는데 이는 보조금을 매출에게 차감하는 것임 ▶ (홈페이지)약정기간(24개월) 동안 위약금은 \$175에서 시작, 약정기간 동안 매달 5\$씩 감소함
SPRINT NEXTEL CORPORATION (미국)	US-GA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말기 매출로 발생하는 수익보다 초과하는 단말기 매출원가(즉 보조금)는 인도시점에 비용인식 ▶ (홈페이지)1년 또는 2년 약정기간 중 해지시 위약금 부과
T-Mobile (미국)	US-GA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인센티브와 경쟁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단말기 취득원가 이하로 판매(손익계산서상 단말기매출액보다 매출원가가 더 큼) ▶ (홈페이지)해지시 \$200의 위약금을 부과
France Telecom (프랑스)	IF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자 유치비용은 발생하는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
BT (영국)	IF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자 유치비용은 발생하는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 다만 자산의 인식요건 충족시 자산화하여 계약기간 또는 고객유지기간중 짧은 기간동안 상각
Vodafone (영국)	IF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자 유치비용은 발생하는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
Telecom Italia (이탈리아)	IF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인식요건[취득원가 신뢰성 있게 측정, 약정기간동안 강제하는 계약(의무사용기간을 강제하고 해지시 위약금이 있음),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아야]을 충족한 경우 자산처리하고, 일반적으로 비용으로 처리
Tele 2 (스웨덴)	IF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자 유치비용은 직접 비용으로 처리하되,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산처리
Turkcell (터키)	IF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자 유치비용은 비용처리 하되, 가입자 유치비용은 의무사용기간을 강제할 수 있고 개별적인 계약으로부터 수익을 확정할 수 있다면 자산계상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 참고자료: 기간약정단말기 보조금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2008. 7. 3

라. 전문가 의견

(1) 경희대학교 강병민 교수

회계분리기준 제17조에 단말기보조금을 판매영업기능비용으로 분류하였다고 해서 보조금을 무조건 당기비용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분류상 비용일 뿐 선급비용 성격의 자산처리도 가능하다. 그러나, 사업자에게 비용처리와 자산처리 중 선택권을 주면 비교가능성은 어쩔 수 없이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규제가 회계처리 방법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예전 통신사 의무사용기간이 있었을 때에 보조금의 자산처리가 가능하다는 시각들이 존재하였으나, 의무사용기간이 폐지되면서 비용처리를 하게 되었고 현재 의무약정기간의 부활로 인해 또다시 보조금의 회계처리 문제가 대두되었다. 현재로서는 대안은 첫째, 보조금 회계처리를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것과 둘째, 1년 이상 의무약정기간의 보조금은 자산처리하되, 1년 미만은 비용처리하도록 규정하는 것 이상의 2가지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본 이슈와 관련하여 단말기보조금에만 국한하지 않고, 재무회계에서의 선급비용의 정의와 특성을 감안하여 좀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2) 동국대학교 양동훈 교수

본 이슈와 관련하여 금감원에서 이미 결론 내린바와 같이 보조금의 자산처리에 이론의 여지는 없다고 보여진다. 다만 향후 회계처리 방법의 혼선을 막기위해 회계분리기준에 단말기보조금 회계처리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단말기보조금을 포함한 마케팅비용 즉, 고객획득비용은 향후 그 규모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비용의 종류도 더욱 다양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계처리시 사업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초기에는 비교가능성 논란이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단말기보조금은 마케팅비용의 평균에 수렴하게 될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회계처리방법의 계속성만 담보된다면, 사업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기업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또한, 케이블TV사업자의 셋톱박스 지원비용도 단말기보조금과 성격이 유사하고 향후 이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마케팅비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회계분리기준 상에는 단말기보조금 뿐만 아니라 유사한 비용들의 회계처리도 포괄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3) 대주회계법인 오충한 회계사

통신회계차원에서는 단말기보조금은 이연처리하게 되면 비용처리하는 경우보다 원가보상율이 높게 계산되어져 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가입자로부터의 요금인하 압력이 증대될 것이다. 본 이슈와 관련하여 금감원에서 이연처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으나, 이미 통신회계에서는 재무회계에서 인정하는 판매촉진비의 경우에도 일정한 금액이 초과하는 경우 판매촉진비로 취급하지 않은 판매촉진비 상한을 규정한 바 있으므로 단말기보조금을 통신회계목적에 맞게 통신회계에서 회계처리 규정을 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통신회계에 있어서 단말기보조금을 당기비용처리함을 회계기준에 명확히 하되 과도한 지출에 따른 원가보상률 저하를 막기위하여 판매촉진비 상한선 설정에 준하는 상한제도도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마. KISDI 의견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은 “당기순손익은 일정기간의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 산출한다는 원칙”으로 손익계산서 작성의 원칙 중 하나가 되며, 일정기간동안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원칙이다.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서 일반적으로 수익은 ‘실현주의’에 의해, 비용은 ‘발생주의’에 의해 각각 계산한다. ‘발생주의(accrual basis)’는 ‘현금주의(cash basis)’와 대조적인 개념으로 현금수지와는 직접적인 관계없이 수익과 비용을 발생사실에 의거 회계기간별로 배분하는 원칙이다. 의무약정제하에서의 단말기보조금은 선급비용의 성격을 가지는데, 선급비용은 이미 비용이 발생하였지만 미래의 수익과 대응될 비용이기 때문에 일단 자산으로 인식한 후에 수익과 대응시켜 기간 경과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하

게 된다. 단말기보조금을 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단말기보조금과 수익간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사업자는 단말기 보조금을 지불함으로써 가입자를 확보하게 되면 이에 의무약정기간동안 기본료라고 하는 확실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또한 불확실하지만 통계학적으로 통화료 수익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가입을 유인하기 때문에 가입함과 동시에 발생하는 기본료 수익과 통화료 수익은 단말기보조금과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기간약정제하에서의 단말기보조금은 선급비용으로 자산의 성격을 가지는데, 선급비용은 이미 비용이 발생하였지만 미래의 수익과 대응될 비용이기 때문에 일단 자산으로 인식한 후에 수익과 대응시켜 기간 경과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전기통신회계에서도 기간약정 단말기 보조금은 자산으로 인식한 후 약정기간동안 상각하여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회계적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단, 통신회계에서 규제기관이 정책적 판단에 의해 기간약정 단말기보조금을 당기비용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재무회계와의 일관성 유지 측면에서는 가능하면 재무회계와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전기통신회계는 재무회계와는 목적이나 정보이용자가 다르므로 정책적, 규제적 목적에 의해 재무회계와 다른 회계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없다. 따라서 재무회계에서는 기간약정 단말기 보조금을 자산으로 처리하고 전기통신회계에서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더라도 전기통신회계에서의 회계처리가 정책적, 규제적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결합판매의 증가와 마케팅 경쟁의 증가로 통신단말 장치의 구입지원 비용과 비슷한 성격의 고객획득비용(customer acquisition costs)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기간 약정을 하고 모뎀이나 셋탑 박스를 무료로 주는 것과 같이 통신단말 장치의 구입지원 비용과 비슷한 성격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통신단말 장치의 구입지원 비용의 회계처리 방법을 논의함에 있어 위와 같은 고객획득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규제회계의 일관성 유지 측면에

서도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규제회계에서는 일관성의 유지가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규제회계가 사업자의 원가 회수 시기와 방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전기통신회계에서도 일관성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적절하다. 통신단말 장치의 구입지원 비용과 같은 고객획득비용 또는 고객유치비용에 대해서 첫째는 사업자에게 회계처리에 대한 선택권을 주고 선택한 방법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둘째는 발생한 비용의 자산성을 검토하여 자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으로 처리하는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규제기관에서는 규제의 목적을 더욱 잘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방안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4. 회계분리지침서의 공개의무

회계분리기준 제48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 의무가 사업자들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과 관련 규정들의 조항들을 검토하고 회계분리지침서의 공개의무 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고자 한다.

가. 현황

회계분리기준 제48조(보고서의 공개)는 회계분리지침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가 있으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해관계에 따라 영업비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규제기관의 입장에서도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무조건 공개해야 하므로 행정적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나. 관련 법규

회계분리기준 제48조 제4항에서는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정보공개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한다.

정보공개 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바로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정보공개심의회는 다음과 같다.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사항
 -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전문가 의견

(1) 경희대 강병민 교수

현행 영업보고서 영업통계에 집계되는 투자보수 및 원가보상율 등의 수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사료되고, 회계분리지침서에 역시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존재한다. 통신산업군이 다른 산업군보다 외부요구에 의한 기업의 정보공개 정도가 더할 이유는 없다고 사료되므로, 회계분리기준 제48조 제1항에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회계분리지침서 공개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사료된다.

(2) 동국대 양동훈 교수

몇몇 거대 통신사업자를 제외한 통신사업자의 회계분리지침서까지 모두 영업비밀이라고 간주하기는 힘들다. 특정사항들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더라도 영업보고서 및 회계분리지침서 전체를 비공개로 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계분리지침서를 공개하도록 하고, 영업비밀의 침해여부는 ‘회계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면 적절하리라 사료된다.

(3) 대주회계법인 오충한 회계사

회계분리지침서는 원가계산흐름 및 배부기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경영상 비밀(원가계산시스템)은 외부에 공개될 경우 회사가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영관리시스템의 일부를 타인이 무단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7호에 명시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회계분리기준 제48조에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보를 공개”하도록 제한하여야 한다고 사료된다.

라. KISDI 의견

정보공개 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보공개 제도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회계분리지침서 및 영업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회계분리지침서에는 회계정리단위 내역 및 적용표, 각 기관별 배부방법, 원가의 흐름도, 회계분리단계별 배부기준 적용표,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구분방법, 전기통신기능설비의 세분류 방법, 역무별 자산등의 분계점의 표시 및 기타서비스 개념 등을

표시하도록 회계분리기준 제41조 제2항은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회사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네트워크 구성도, 부서 구성도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공개된다면 회사 영업비밀이라 할 수 있는 내용까지도 공개되기 때문에 공개는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가 산정의 프로세스도 회사가 오래 동안 축적해온 무형의 자산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행 회계분리기준 제48조 제1항에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회계분리지침서가 무조건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판단은 방송통신위원회 회계전문위원회에서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회계분리기준 제48조 제3항이 공개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영업통계도 역무별 손익 상황이 드러나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부문별 재무정보는 기업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하게 되므로 그 경쟁적 지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보 공개의 범위는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최소한의 재무자료인 대차대조표(별지 제1호 서식)와 손익계산서(별지 제2호 서식) 정도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5. 영업권의 원가성 검토

2002년 SKT와 신세기통신의 합병 이후, M&A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업권의 통신원가 포함 여부와 포함 시 영업권의 통신원가 인정 범위에 관한 논란이 있어왔다. M&A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권은 그 가치가 매우 크므로, 이의 통신원가 포함 여부는 투자보수 및 요금규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가. 현황

회계규정 제7조에 제2항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무형자산은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무형자산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동 규정 제12조에

서는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중인 무형자산을 영업권, 주파수이용권, 산업재산권, 차지권, 개발비, 그 외 기타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역무나 서비스에 포함된 영업권은 해당 역무나 서비스의 총괄원가의 일부로 인정된다. 그런데 과연 일반적인 기업의 인수·합병으로 인해 발생한 거액의 영업권이 통신서비스의 총괄원가가 될 수 있는가가 논의의 핵심이 된다.

과거, 2002회계연도 접속원가 검증시 KISDI는 2002년에 이루어진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영업권에 대하여 접속원가 포함 여부를 연구하였고 연구결과 인수·합병으로 발생하는 식별가능하지 않은 영업권은 회사의 판매·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영업권의 감가상각비와 영업권에 대한 투자보수를 접속원가에 포함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 통신위원회는 영업보고서 검증 과정에서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영업권 중 신세기통신이 기존에 사용하던 채널고객가치를 포함한 주파수가치의 일부를 전기통신사업의 자산과 비용으로 인정하였다.

구 통신위원회와 KISDI의 판단 이후, SK텔레콤은 영업권 중 일부를 전기통신사업의 자산과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접속원가에서는 제외되고 있다.

나. KISDI 의견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의하면 영업권은 매수원가 중 매수일 현재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순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매수회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으로서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에 의해 무형자산 중 별도 표시하는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 회계규정에서 영업권을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무형자산으로 인정하여 통신원가에 포함하는 것은 재무회계기준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다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영업권의 통신원가로의 포함 범위이다. 영업권 전체를 통신원가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분만 인정할 것인지는 영업권의 식별가능성 여부에 달려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무형자산: 2001. 12. 27)는 “매수기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과 그 밖의 무형자산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차이는 매

수기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은 식별가능하지 않고 그 밖의 무형자산은 식별가능하다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통신위원회는 영업권 중 이동전화역무와 관련하여 시너지효과가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통신원가로 인정해 주었다.

정부는 IMT-2000(3G)서비스를 도입하기 전에는 주파수 가치의 일종인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인 주파수이용권의 개념을 도입하지 않았다. 정부는 주파수이용권 대신에 주파수 가치를 회수하기 위하여 전파세를 부과하고 있었고 지금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전파세 속에 이미 주파수이용권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영업권의 일부에 주파수 이용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인수·합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권은 회사가 제공하는 세부 서비스로 분류하여 판매영업 관련 자산과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6. 이동망 2G와 3G서비스의 회계분리

현행 회계분리기준에 의해 이동전화사업자는 2G서비스와 3G서비스를 서비스별 회계분리하여 보고하고 있다. 2G와 3G서비스 회계분리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가. 현황

회계분리기준 제2조에 따르면 회계분리는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과 관련된 자산, 비용 및 수익을 형태별, 기능별 분류를 거쳐 해당 역무별로 할당·배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이동전화사업자들은 역무별(서비스별) 회계분리를 하고 있다.

이동사업자들은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를 제공하고 있는데, 회계분리 기준 제3조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를 세부 서비스별로 세분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동전화를 셀룰러 또는 PCS(2G)와 IMT2000(3G)서비스로 나누고 있다. 현재는 이에 따라 이동전화 사업자 중 3G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SKT와 KTF는 2G 서비스와 3G서비스를 회계분리하여 보고하고 있다.

나. 해외사례

해외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동전화서비스가 비규제(non regulated) 서비스여서 이동사업자에 대해서는 회계보고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회계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1) 영국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들은 새로운 통신사업규제에 의하여 시장을 분석하여 규제와 관련이 있는 시장(Relevant Market) 혹은 규제가 필요한 시장을 결정하고, 해당 시장의 경쟁상태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지배력을 가진 지배적사업자를 지정한다. 시장지배력이 있는 사업자는 규제의 목적에 의하여 의무가 부여된다. 상호 접속지침에 의한 도매시장에 대한 의무, 보편적서비스지침에 의한 소매시장에 대한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그 의무 중에 회계에 대한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도매시장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상호접속지침서는 회계와 관련하여 투명성 의무(제9조), 회계분리 의무(제11조), 원가에 근거한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원가를 분류하는 주요 구분이나 비용배부에 이용한 원가계산제도를 공개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는 의무(제13조)가 있다. 소매시장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보편적 역무 지침서는 소매요금을 규제하는 경우 원가계산제도 실시 혹은 준수사항을 공표할 의무(제17조)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유럽연합이 새로이 제안한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규제 틀에 부응할 수 있도록 2003년도에 통신법을 개정하였다. 2003년 통신법 제2장은 통신망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조건은 일반적인 조건,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조건, 특권 사업자(Privileged supplier)에 관한 조건, 접속에 관한 조건 및 시장지배력(SMP)에 관한 조건 등이 있다. 이 중 시장지배력을 갖는 서비스에 관한 조건에서 회계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제87조(통신망 접근 등에 관한 조건)(6)항(b)와 (9)항부(11)항은 도매원가회계에 관한 사항을, 제91조(가입자를 위한 서비스 규제 등에 관한 조건)(5)항과(6)항 및 제92조(전용회선에 관한 조건)(2)항과(3)항은 소매원가회계에 관한 사항을, 제87조(통신망 접근 등에 관한 조건)(6)항(b),

(7)항 및 (8)항은 회계분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규제기관인 Ofcom은 통신법에 근거하여 2004년 7월 22일 “BT와 Kingston Communications 회사가 의무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는 영업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동사업자들은 회계보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2G와 3G에 대한 회계보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회계의무조건은 주로 회계서류 작성, 감사, 제출 및 공지에 관한 의무들을 규정하였다. Ofcom은 회계의무에 관한 고시가 적절하고 균형잡힌 의무를 계속적으로 부과하고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를 정기적으로 재검토 하고 있다.

(2) 일본

일본의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는 전기통신사업회계와 접속회계로 크게 구분된다. 전기통신사업회계규칙은 <표 3-2>와 같이 기초적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지정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및 금지행위 등 규정 적용 전기통신사업자의 회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표 3-2> 전기통신사업회계규칙상의 회계의무

구분	기초적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지정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금지행위 등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
대상 사업자	NTT동서, CATV전화사업자 등 19개사	NTT동서	NTT동서, NTT DoCoMo 그룹 등 11개사
작성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등 • 기초적전기통신역무손익명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등 • 지정 전기통신역무손익명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등 • 기초적전기통신역무손익명세서 • 지정전기통신역무손익명세서 • 이동전기통신역무손익명세서

자료: 총무성,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 개요: 참고자료 1”, 4, 21p, 2007. 10

기초적전기통신역무손익명세서와 지정전기통신역무손익명세서, 이동전기통신역무손익명세서상의 역무구분은 <표 3-3>과 같다. 이동전기통신역무의 데이터전송역무와 음

성전송역무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2G와 3G를 별도로 구분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 3-3〉 각 손익명세서상의 역무구분

구분	기초적전기통신역무손익명세서	지정전기통신역무손익명세서	이동전기통신역무손익명세서
역무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적 전기통신역무 - 기초적 전기통신역무 이외의 전기통신역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 전기통신역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전기통신역무 - 음성전송역무 - 기본료 - 시내통신 - 시외통신 - 공중통신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역무 - 일반전용 - 시내전용 - 시외전용 - 고속디지털전송 - 시내전용 - 시외전용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전기통신역무 이외의 전기통신역무 - 지정 전기통신역무 이외의 전기통신역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 전기통신역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성전송역무 - 휴대전화 - PHS - 기타 이동체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전송역무 - 이동 전기통신역무 이외의 전기통신역무

다. KISDI 의견

회계분리의 여부는 규제여부와 관련되어 있다.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비스와 사업자에 대해서는 회계분리와 보고의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규제에 필수적인 수익 및 원가 정보가 산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요금인가제

는 이동전화서비스의 경우, SKT의 2G서비스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SKT 2G 이동전화는 규제 대상 서비스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SKT의 2G와 3G서비스는 회계분리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현재 SKT와 KTF는 2G와 3G서비스를 분리하여 보고하고 있다.

회계분리기준에서 규제 대상 서비스에 대해서만 회계분리를 하여 보고 하도록 한다면, 접속, 보편과 관련하여서도 회계정보가 필요한데 이러한 정보는 어떻게 생성할 것인가가 문제로 남게된다. 접속, 보편에서 필요한 회계정보는 접속, 보편의 해당 기준(고시)에서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그 기준에서 필요한 만큼의 회계정보만을 사업자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사업자입장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규제자 입장에서는 규제에 꼭 필요한 회계정보만을 수집하여 효율적 규제를 위한 정보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7. 마케팅 비용의 총괄원가 포함 여부

현행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상의 총괄원가에는 마케팅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규제 관점에서 마케팅비용의 총괄원가 포함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마케팅 비용의 총괄원가 포함 여부에 대한 검토를하고자 한다.

가. 현황

현행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34조는 총괄원가를 정의하고 있는데, 총괄원가는 사업비용과 투자보수의 합이다. 사업비용은 영업비용, 출연금,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전기통신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익 및 법인세비용의 합이다. 영업비용에는 인건비, 감가상각비, 판매촉진비가 포함된다. 영업비용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을 위해 소비된 비용항목을 말하며 영업수익에 대응하여 발생하는 항목이다. 보통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영업비용이라 한다. 따라서 현행 회계분리기준제34조와 제35

조, 영업비용에 대한 일반적 개념으로 미루어 볼 때, 전기통신사업의 총괄원가에는 마케팅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사료된다.

나. 공공요금 산정기준에서의 총괄원가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부)는 1982년 12월 24일에 공공서비스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공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절한 공공요금을 산정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자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제정하였으며 2005년 4월 12일에 한 차례 개정을 하였다. 이 기준에서도 총괄원가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I. 총칙의 2. 공공요금산정의 기본원칙의 나에서 총괄원가를 정의하고 있다. 총괄원가는 성실과 동시에 능률적인 경영하에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소요되는 적정원가이다 공공사업에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 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을 말하고 있다. II. 총괄원가에서 적정원가라는 개념을 말하고 있는데, 적정원가는 영업비용의 합계에서 지급이자를 제외한 영업외비용과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인세를 더하고 영업외수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공공요금의 산정기준의 적정원가에도 기본적으로 영업비용이 포함되며 마케팅 비용은 이 영업비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공요금 산정기준에서도 마케팅 비용을 총괄원가에 포함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다. 해외사례

미국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FCC에 의해 회계보고의 의무를 부여받은 통신사업자는 47 CFR Part 32(Uniform System of accounts for telecommunications companies)에 의해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47 CFR Part 32의 ‘subpart E-instructions for expense accounts’에는 손익계산서의 비용항목에 포함되는 세부 계정들에 대한 설명이 담겨있다. 비용은 Plant specific operations expense, Plant nonspecific operations expense, Customer operations expense, Corporate operations expense의 4가지 그룹으로 세분되는데, Customer operations expense에는 Marketing, Product mana-

gement and sales, Product advertising의 마케팅 관련 비용 계정들이 포함된다.

〈표 3-4〉 47 CFR part 32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익계산서 비용항목

	Network support expense
	Motor vehicle expense
	Aircraft expense
	Tools and other work equipment expense
	General support expenses
	Land and building expenses
	Furniture and artworks expense
	Office equipment expense
	General purpose computers expense
	Central office switching expense
	Non-digital switching expense
	Digital electronic switching expense
	Operators system expense
	Central office transmission expenses
Plant specific	Radio systems expense
operations expense:	Circuit equipment expense
	Information origination/termination expense
	Station apparatus expense
	Large private branch exchange expense
	Public telephone terminal equipment expense
	Other terminal equipment expense
	Cable and wire facilities expenses
	Poles expense
	Aerial cable expense
	Underground cable expense
	Buried cable expense
	Submarine and deep sea cable expense
	Intrabuilding network cable expense
	Aerial wire expense
	Conduit systems expense

Plant nonspecific operations expense:	Other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expenses
	Property held for future telecommunications use expense
	Provisioning expense
	Network operations expenses
	Power expense
	Network administration expense
	Testing expense
	Plant operations administration expense
	Engineering expense
	Access expense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expenses
	Depreciation expense-telecommunications plant in service
	Depreciation expense-property held for future telecommunications use
	Amortization expense-tangible
	Amortization expense-intangible
Amortization expense-other	
Customer operations expense:	Marketing
	Product management and sales
	Product advertising
	Services
	Call completion services
	Number services
	Customer services
Corporate operations expense:	General and administrative
	Provision for uncollectible notes receivable

라. KISDI 의견

통신회계에서의 총괄원가는 통신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원가만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통신서비스 요금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 즉 요금기저가 된다. 따라서 총괄원가는 통신서비스가 생산되어 이용자에게 공급되는 공급사슬의 전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인식함이 타당하다. 즉 서비스의 생산에 관련된 비용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 즉, 통신서비스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광고·선전비용, 판촉비용 등도 총괄원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총괄원가와 통신서비스 요금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고려해 볼 때, 규제 목적상 일부 비용항목에 대하여 원가로서의 인식을 제한하거나, 제외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동통신사업자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과도한 마케팅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여지는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 요금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케팅비용 중 과다 지출항목의 총괄원가 인정을 제한할 수도 있다. 덧붙여 이러한 총괄원가 범위의 제한을 통한 요금인상 억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총괄원가와 연계된 체계적이고 투명한 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8. 역무통합으로 인한 통신회계제도 개선사항

가. 회계분리 절차 수정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의 자산등의 경우 전기통신사업에 사용중인 자산등을 위한 형태별 분류와 기능별 분류체계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과 전기

〈표 3-5〉 회계분리 절차 개선안

현 행	개선안	비 고
제4조(회계분리의 절차)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자산등을 회계분리 하여야 한다. 1. 형태별 분류 2. 기능별 분류 3.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간 분류 4. 전기통신사업에 사용중인 자산등과 미사용중인 자산 등의 분류 5. 전기통신사업에 사용중인 자산등의 역무별 회계분리	제4조(회계분리의 절차)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자산등을 회계분리 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간 분류 2. 형태별 분류 3. 기능별 분류 4. 전기통신사업에 사용중인 자산등과 미사용중인 자산 등의 분류 5. 전기통신사업에 사용중인 자산등의 역무별 회계분리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형태별/기능별 분류체계에 맞지 않는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의 분류를 위해 회계분리절차 수정

현 행	개선안	비 고
제20조(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의 분류)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 등은 사업자가 정한 배부기준을 이용하여 각각의 사업으로 회계분리하되, 전기통신외의 사업에 대한 내용과 배부기준을 회계분리지침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배부기준은 제4장(역무별 회계분리)의 배부기준을 참조하여야 하며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산등의 금액이 기준금액(당해사업자의 당해연도 영업수익의 0.01% 또는 1억원 미만으로서 적은 금액)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용도의 사업으로 분류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의 분류)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 등은 사업자가 정한 배부기준을 이용하여 각각의 사업으로 회계분리하되, 전기통신외의 사업에 대한 내용과 배부기준을 회계분리지침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의 분류는 사업자의 판단에 의해 수행하고 배부기준은 회계분리지침서 및 영업보고서 검증시 검증

통신사업외의 사업간 분류를 수행한 후 전기통신사업의 자산등을 대상으로 형태별 분류와 기능별 분류를 수행하도록 개정하고,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의 분류 기준도 회계분리기준 제6조로 조항을 변경하여 형태별/기능별 분류이전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나. 전기통신기능설비의 세부분류 조항 개선

회계분리기준 제14조 전기통신기능설비의 세부분류는 접속원가산정 대상사업자를 위한 규정이므로 회계분리기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조항이므로 삭제하고 상호접속기준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3-6〉 전기통신기능설비의 세부분류 조항 개선안

현 행	개선안	비 고
제14조(전기통신기능설비의 세부분류) 상호접속기준에 의거 접속원가산정 대상사업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기능설비를 다음 각호와 같이 설비 및 구간별로 세분류하여야 한다. 1. 교환기능설비 가. 단국교환설비	- 삭제 -	접속원가산정을 위한 회계분리기준상의 조항은 모두 삭제하고 상호접속기준에서 규정하도록 함

현 행	개선안	비 고
나. 이동단국교환설비 - 중략 - 차. 교환기능공통설비 2. 전송기능설비 가. 가입자중계 전송설비 나. 기지국설비 및 제어장치 - 중략 - 3. 선로기능설비 가. 가입자 선로설비 나. 가입자중계선로설비 - 중략 -	- 삭제 -	접속원가산정을 위한 회계분리기준상의 조항은 모두 삭제하고 상호접속 기준에서 규정하도록 함

다. 지역별 회계분리조항 삭제

〈표 3-7〉 역무의 지역별 회계분리 개선안

현 행	개선안	비 고
제5장 역무의 지역별 회계분리 제37조(영업비용의 지역별 분류) 지역별로 직접 분류되는 영업비용은 당해 지역에 직접 귀속시키고, 지역별로 직접 분류가 어려운 영업비용의 지역별 분류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교환운영비용: 지역별 교환시설수 또는 가입자수 2. 전송운영비용: 지역별 전송시설수 또는 가입자수 3. 단말운영비용: 관련 가입자수 4. 전원운영비용: 전원설비의 취득가액 비율 5. 판매영업비: 가입자수 6. 관리비: 기집계비용 비율 7. 접속료: 매출액 비율 8. 설비사용료: 직접분류 또는 가입자수 비율 9. 감가상각비: 고정자산 분류와 동일한 기준 제38조(영업외비용등의 지역별 분류) 지역별로 직접 분류되는 영업외비용등은 당해 지역에 직접 귀속시키고, 지역별로 직접 분류가 어려운 영업외비용등의 지역별 분류는 제37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39조(유형자산등의 지역별 분류) 지역별로 직접 분류되는 유형자산등은 당해 지역에 직접 귀속시키고 지역별로 직접 분류가 어려운 유형자산 등의 지역별 분류는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단, 전원설비는 전원설비 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 삭제 -	사문화 되었으므로 삭제

현행 회계분리기준 제5장 역무의 지역별 회계분리는 과거 무선호출서비스를 위한 조항으로 사문화 되었으므로 삭제가 필요하다.

라. 자산의 금융비용 기간비용 처리 명시

자산의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융비용의 회계처리는 기간비용으로 계상하여 사업자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투자보수 계상시 이중 계상의 논란을 배제시키도록 회계분리기준 제7조에 관련내용 추가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표 3-8〉 자산의 금융비용 회계처리 개선안

현 행	개선안	비 고
<p>제7조(유형자산등의 취득)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등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계상한다.</p> <p>1. 취득원가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증받은 유형자산등은 공정가치로 계상한다.</p> <p>2. 유형자산등을 일괄 취득하는 경우에는 구성자산의 공정가치비율을 기초로 분배한다.</p> <p>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인수합병으로 유형자산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인수합병회사의 각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한다.</p>	<p>제7조(유형자산등의 취득)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을 위한 유형자산등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계상한다.</p> <p>1.~3. 생략</p> <p>4. <u>유형자산등의 취득과 관련한 금융비용은 취득원가로 계상하지 않고 기간비용으로 계상한다.</u></p>	<p>기업 회계 기준상 자본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목적상 기간비용으로 계상하도록 명시</p>

마. 전송 및 선로원가 배부기준 재검토

현행 회계분리기준의 전송과 선로의 공통설비 및 운영공통비의 역무별 배부기준은 원칙적으로 E1급을 1회선으로 하여 실제 사용되는 회선수이다.

DS1급(E1)을 기준으로 각 전송회선의 속도를 환산하여 회선수를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예를들어, DS3급인 45M회선은 21E1이고, STM-4급 622M회선은 252E1이다.

〈표 3-9〉 회계분리기준상 전송 및 선로공통 역무별 배부기준

구 분	전 송	선 로
회계분리기준 제31조 (공통 전기통신설비의 역무별 배부)	E1급 실제 사용회선수 - E1급이 어려운 경우 T1급 회선수 - 회선수 산출이 어려 운 경우 • 직접 분류된 전송설 비 장부가액 비율 • 사용시간	가입자선로 - 운용실선수 중계선로 - 실제 사용되는 회선수, 사용시간
회계분리기준 제23조 (전기통신설비운영 공통비의 역무별 배부)	E1급 실제 사용회선수 - E1급이 어려운 경우 T1급 회선수 - 직접 분류된 전송설 비 취득가액 비율 - 사용시간	가입자선로 - 운용중인 선로회선수 • 다만, 복수의 서비스제공에 사용되는 경 우 각각의 서비스가 동일한 비율로 사 용하는 것으로 회선수 산정 중계선로 - E1급 실제 사용 회선수 - 어려운 경우 T1급 운영회선수

2.5G 전송로의 경우 E1회선수로 환산하면 1,008회선이다. 2.5Gbps 회선은 E1회선에 비해 1,008배의 전송 및 선로기능원가를 배부받게 된다. 이러한 E1을 기준으로 한 회선수 배부기준의 기본가정은 속도와 원가가 정비례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즉,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원가가 비례하여 소요된다는 것을 가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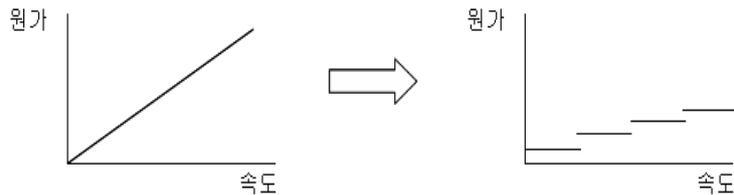
〈표 3-10〉 E1환산 회선수

전송회선 속도급	E1환산회선수	전송회선 속도급	E1환산회선수
1,544K(T1)	1	622M(STM-4)	252
2,048K(E1)	1	1G	504
45M(DS3)	21	2.5G(STM-16)	1,008
155M(STM-1)	63	10G(STM-64)	4,032

E1급을 기준으로 한 배부기준 도입 당시는 E1급 회선이 고속도급 회선이었으나 현재는 부가서비스의 회선용량 급증 등의 환경변화에 의해 2.5Gbps(STM-16), 10Gbps(STM-64)급 회선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40Gbps급 회선의 도입되는 등 메가(Mbps)급이나 기가(Gbps)급의 회선이 보편화된 상황이다.

국간 전송장비의 경우 P-to-P방식의 국간 대항 방식으로 전송망을 구성하여 집선 전송방식을 취한다. 예를 들어 KT의 경우 시외국간 전송의 경우 다양한 속도급 회선을 한꺼번에 묶어서 80G나 400G로 전송하게 된다. 전송원가의 경우 속도와의 상관관계가 정비례에서 아래와 같이 점진적인 비례 관계로 변화하였다.

[그림 3-1] 전송원가와 속도와의 상관관계 변화



중계선로원가의 경우 광선로의 보급으로 회선의 속도와 원가의 상관관계가 없어졌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회선의 속도는 양단의 전송장비에 의해 결정되고, 기술발전에 따라 전송장비의 용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광선로 자체의 속도 잠재력은 무한대에 가깝다. 결국 광전송매체의 특성 상 전송속도가 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소멸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전송 및 선로 공통자산/비용의 배부기준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 절 장기 발전 방향

1. 전문가 의견

가. 경희대학교 강병민 교수

(1) 기술발전과 통신환경 변화를 반영한 회계제도 마련

최근 기술발전과 통신수요의 다양화로 신규서비스, 지능망서비스, 결합서비스 등에 대한 제도 마련과 그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데이터통신의 합리적 회계분리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초고속인터넷의 폭발적 수요증대로 인해 음성, 데이터, 영상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VoIP, IPTV, Wibro 등 멀티미디어 통합서비스로 발전하는 추세이고, 궁극적으로 통신, 방송 및 인터넷의 대통합으로 차세대 통신망인 NGN을 통한 All-in-One Network이 실현되리라고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규제대상서비스, 본 서비스 및 추가·부가서비스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각 서비스별 원가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회계분리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 용어정의를 명확히 하고, 전국대표전화 등 지능망전화서비스 및 인터넷쇼핑몰, 종합물류정보망, 대출중계서비스 등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구분기준 개선, 무선통신 비중의 확대에 따라 LM서비스등을 별도 서비스로 구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여 회계제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이동통신망에 있어서 데이터통신의 비중이 증가됨에 따라 음성통신과 데이터통신에 대한 정확한 원가동인을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회계분리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투자보수율 산정방안 명시

투자보수율은 통신원가의 핵심 요소임에도 회계분리기준과 상호접속기준, 보편적 서비스 기준, 설비제공기준 등에 방통위가 정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산정방식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 산정방식의 내용을 명문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회계분리기준 제36조 제3항에 의하면 투자보수율을 방통위가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 상호접속기준에 의하여 정한 투자보수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회계분리기준의 상호접속기준에 대한 의존규정은 회계분리기준이 접속료 산정에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법적체계상 일관성이 없는 규정이라 사료된다. 또한 접속원가검증은 매년이 아니라 2년마다 수행되고 장기증분원가에 기초하기 때문에, 상호접속기준상의 투자보수율은 적시성 면에서 적합한 값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이렇듯 투자보수율 산정방법에 대한 규정의 부재는 부정확한 원가산정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방통위가 모든 기간통신사업자의 투자보수율을 산정하여 발표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회계분리기준에 투자보수율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사업자가 산출하여, 이를 영업보고서 작성에 이용하고, 방통위는 사업자가 산출한 투자보수율에 대한 타당성만 검증하는 것이 규제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 회계정보가 이용되는 제반 정책제도와 연계성 검토

회계정보가 사용되는 요금제도, 상호접속제도, 보편적역무제도, 설비제공제도, 경쟁경쟁제도와 관련한 기준들을 분석하여 통신회계규정이 그러한 제도목적에 적합한 원가정보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회계분리 정도의 조정 필요하다.

상호접속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망관련원가와 망무관원가의 분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보편적역무제도 보완을 위하여 손실보전금 산정과 관련한 보편적역무 구분체계를 반영하면서 지역별 회계분리와 관련한 회계분리절차 및 배부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호접속, 가입자선로 공동활용, 통신설비제공, 재판매 등의 제반 제도 및 통방융합에 유용한 정보 또는 기초적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망세분화의 적정성의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4) 회계전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 또는 명확화

통신산업의 특성상 제반 환경변화의 속도를 제도적 지원이 따라가기 힘든 현실에서 모든 필요조항을 회계기준에 명확히 규정하기는 어렵고, 기준 개정시에도 상당

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이다. 시의적절하고 명확한 회계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회계전문위원회에 회계기준에 관한 해석권 및 추가조항 신설권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결정이 회계기준과 상충되지 않는 한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함으로써 적시에 정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대주회계법인 오충한 회계사

(1) 국제회계기준에 대응한 통신회계제도 개선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의 회계처리에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K-IFRS)은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공시체계, 자산과 부채의 평가방법 및 정책적 목적 등의 반영여부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통신회계상 관련 규정 명시 및 정비 가 필요하다.

특히, 국제회계기준의 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의 회계처리는 규제정책에 혼란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 2010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비교식 재무제표가 작성되어야 하므로 통신사업자는 유형자산을 역사적 원가에 의한 원가법과 현행원가에 의한 재평가법 중에 선택하여 회계처리가 가능하다. 유형자산가액의 비중이 타 산업군에 비해 높은 통신산업의 경우, 원가법과 재평가법에 의한 자산가치의 차이는 통신원가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 공정경쟁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전통적으로 통신회계는 취득원가보다 더 보수적인 개념인 원시원가(Original Cost) 개념이 있어 해당 자산의 원시구매금액만을 요금산정을 위한 취득원가로 인정하고 있으나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통신자산을 재평가하는 경우(주로 토지, 건물, 구축물, 관로 등이 해당) 평가증이 예상된다. 이러한 평가증은 원가보상률을 낮추게 되어 사업자로 하여금 요금인상 또는 요금유지 유인을 높일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회계기준 변경은 경쟁적인 통신환경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요금규제를 위한 역사적원가 고수 여부와 더불어 통신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 조정방안을 규정개정안에 어떻게 포함 시킬지를 고민해야 한다. 특히, 현행 TD-LRIC에 의한 접속료 산정 및 표준원가방식에 의한 설비제공대가 산정에 있어서 역사적 원가자료가 이용되므로 재평가법으로 회계처리하더라도 역사적원가자료를

유지, 관리 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다. 안전회계법인 박언용 회계사

(1) 회계처리규정의 일원화

전기통신사업 회계처리규정은 현재 회계규정과 회계분리기준(고시)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당초 이원화의 이유는 회계분리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회계분리기준에서 실무적인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생겼으나, 실제 통신시장의 변화환경을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관계로 현재 실효성이 낮은 규정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로 인하여 사업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정확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영업보고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제출하기에 큰 하자없는 작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자신의 경영관리를 위한 관리회계에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다. 또한 회계분리의 출발점을 재무회계의 수치에서 시작하다 보니 정보통신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회계처리를 반영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수년전, SKT의 영업권 이슈 및 퇴직금 중간정산 이슈와 KT의 명예퇴직금 이슈 등이 이러한 상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영업보고서 검증의 과정에서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 등이 없는 관계로 피상적인 검증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매년 이루어지는 회계분리기준 개정으로 인하여 사업자들이 느끼는 회계분리기준의 권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회계처리규정을 일원화하고,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각 사업자가 작성하는 원가분리지침서의 검증으로 실질적인 규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회계처리규정의 적용대상 범위 확대

현재 회계처리규정은 통신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방송사업자 및 방송통신 겸영사업자가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고, 이에 맞는 내용을 보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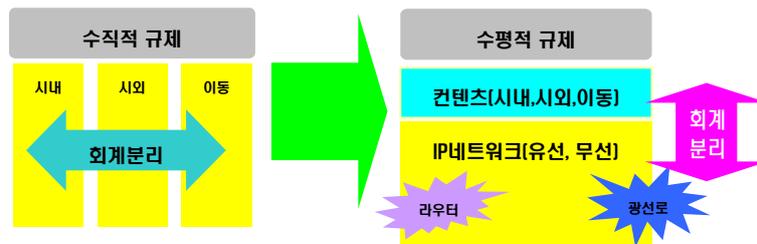
2. KISDI 의견

현행 전기통신회계제도는 역무간 상호보조 방지와 공정경쟁 유도의 목적하에 유선 사업자와 이동사업자, 역무 구분에 의한 분리 즉, PSTN과 이동전화망 중심으로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와 역무간 1:1대응이 가능하다. 그러나 작금의 통신환경 변화는 전기통신회계제도의 변화 또한 요구하고 있다. 서비스간 상호보조 방지와 공정경쟁 유지의 요구는 더욱 증가하고 있고, 단일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 역무구분의 실효성이 상당 부분 감소하였다. 또한 브로드밴드와 및 All-IP망으로의 진화로 네트워크와 역무의 1:1 대응이 어려워지고 결합상품 등장으로 개별 서비스의 정교한 회계분리가 더욱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통신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전기통신회계제도의 장기적 발전방향은 다음의 3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첫째, 전기통신회계제도에 수평적 규제를 반영해야 한다. 수평적 규제라 함은 특정 네트워크, 서비스와 관계없이 동일한 계층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함을 의미한다. 현행 회계제도는 역무구분, 설비구분, 음성/데이터 구분을 설정하고 있으나 콘텐츠 계층과 네트워크 계층으로 구분되는 수평적 규제하에서는 역무구분이나 음성/데이터 구분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수평적 규제하에서 콘텐츠와 네트워크 계층의 분리 규제가 예상되고 통신역무는 단일화 되어질 것이다.

둘째, 전기통신회계제도에 있어 IP기술과 네트워크에 적합한 회계분리 배부기준의 반영이 필요하다. 브로드밴드화에 의한 전송 네트워크의 고속, 대용량화가 진행되고 전송 네트워크의 IP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져 PSTN과 IP망이 공존하는 현실에서 향후에는 All-IP망으로의 진화가 예상된다. IP망에서는 음성과 데이터 모두 패킷화되어 전송되는데, PSTN내의 설비에 적합한 현행 회계분리 배부기준은 IP네트워크에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PSTN의 배부기준으로 통화량을 이용할 수 있으나 IP망에서는 통화량을 그대로 배부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패킷이나 용량 등 적절한 배부기준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수평적 규제하의 콘텐츠 계층과 네트워크 계층간의 원가를 분리하기 위한 배부기준에 대한 연구도 필수적이라 사료된다.

[그림 3-2] 수직적 규제에서 수평적 규제로의 전환



셋째, 회계보고 의무 사업자의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 수평적 규제체계가 실현될 경우 사업자 구분은 전송사업자로 단일 구분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기간/별정/부가 통신사업자의 구분에 의해 회계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상황평가에 의해 회계보고 의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에게 회계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제 4 장 결 론

본 연구는 역무통합 등 통신환경 변화에 따른 통신 회계제도의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현행 전기통신사업회계와 관련된 주요 이슈를 검토하여 현안과 관련된 정책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통신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전반적인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를 검토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높였다고 판단된다. 주요 연구내용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단기 개선방안으로서 주요 이슈별 검토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별정사업자 회계보고 의무 부여에 대해서는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유용한 정보 제공이라는 전기통신사업회계의 목적상 모든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그들이 제공하고 있는 모든 역무에 대하여 회계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회계정리 의무를 부과하기 이전에 전기통신사업에서의 공정경쟁을 유지하기 위하여 규제하여야 하는 서비스 혹은 역무가 무엇인가를 조사하고, 동 서비스 시장에서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유용한 회계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얻을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회계정리 의무 부과 여부는 사업자의 종류가 아니라 서비스 시장에서의 사업자의 영향력에 달려 있기 때문에 공정경쟁이 필요한 시장을 규정하고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회계정리 의무를 부과하여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를 방지하고 공정경쟁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판매촉진비 상한 규정은 규정의 적용가능성 및 적절성 검토 결과, 판매촉진비의 적정성을 규정하여 비용의 일부만을 원가로 인정하는 기준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현행 판매촉진비 상한규정에 의거하여 생산된 원가정보로 서비스 요금의 적정성을 판단하기에는 판단기준이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범조문화 할 수 없으며, 이용약관을 심사하는 단계에서 판매촉진비 뿐만 아니라 다른 비

용까지도 적정성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현행 회계분리기준의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는 분리기준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별표도 조정되어야 한다. 판매촉진비와 같이 사업자가 시장점유율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도하게 지출하는 경우 비용의 적정성 보다는 판매활동에서 야기되는 부당행위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정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사료된다.

단말기 보조금 회계처리 방안은 기간약정제하에서의 단말기보조금은 선급비용으로 자산의 성격을 가지므로 일단 자산으로 인식한 후에 수익과 대응시켜 기간 경과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전기통신회계에서도 기간약정 단말기 보조금은 자산으로 인식한 후 약정기간동안 상각하여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회계적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재무회계와의 일관성 유지 측면에서는 가능하면 재무회계와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나 통신회계에서 규제기관이 정책적 판단에 의해 기간약정 단말기보조금을 당기비용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회계분리지침서 공개의무 적절성에 대해서는 회계분리지침서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사업자의 영업비밀이라 판단되므로 현행 회계분리기준 제48조 제1항에 제2항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회계분리지침서가 무조건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고,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판단은 방송통신위원회 회계전문위원에서 판단하는 방안이 고려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M&A로 발생하는 영업권은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과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에 의거 재무제표상 무형자산의 항목으로 인식되어진다. 현행 회계분리기준 제36조(투자보수)에 규정되어 있는 요금기저의 범위는 연평균 유형자산 등 장부가액 + 연평균 재고자산 + 적정운전자본이고, “연평균 유형자산등 장부가액”에서 “유형자산등”이라 함은 무형자산을 포함한다. 따라서, M&A로 발생하는 영업권은 통신회계상으로도 무형자산으로서 총괄원가로 인정

되고 있다.

이동망 2G와 3G 서비스의 회계분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행 회계분리기준 제3조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에서 이동통신서비스를 셀룰러 또는 PCS서비스(2G)와 IMT2000서비스(3G)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2G와 3G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는 2G와 3G서비스를 회계분리하여 보고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동전화서비스가 비규제 서비스여서 이동사업자에 대해서는 회계보고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회계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동망 2G와 3G의 회계분리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회계분리하여야 한다.

그 외 역무통합으로 인한 통신회계제도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의 자산등의 경우 전기통신사업에 사용중인 자산등을 위한 형태별 분류와 기능별 분류체계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간 분류를 수행한 후 전기통신사업의 자산등을 대상으로 형태별 분류와 기능별 분류를 수행하도록 회계분리기준 제4조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회계분리기준 제14조의 전기통신기능설비의 세부분류는 접속원가산정 대상사업자들을 위한 규정으로서 회계분리기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조항이므로 조항을 삭제하고 상호접속기준에서 규정하도록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회계분리기준 제5장 역무의 지역별 회계분리는 과거 무선호출서비스를 위한 조항이므로 삭제가 요구된다.

자산의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융비용의 회계처리는 기간비용으로 계상하여 사업자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투자보수 계상시 이중계상의 논란을 배제시키도록 회계분리기준 제7조에 관련내용의 추가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현행 E1급 기준의 회선수 배부기준은 속도와 원가가 정비례 관계에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메가(Mbps)급이나 기가(Gbps)급의 대용량회선이 보편화된 시점에서 속도와 원가의 상관관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전송 및 선로

공통 자산/비용에 대한 배부기준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장기발전 방향으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발전과 통신환경 변화를 반영한 회계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최근 기술 발전과 통신수요의 다양화로 인한 통합망(All-in-One Network)의 실현에 따른 신규 서비스, 지능망서비스, 결합서비스에 대한 제도 마련과 그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데이터통신의 합리적 회계분리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투자보수율 산정방안을 명시하여야 한다. 투자보수율은 통신원가의 핵심 요소임에도 회계분리기준과 상호접속기준, 보편적서비스기준, 설비제공기준 등에 방통위가 정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산정방식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 산정방식의 내용을 명문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회계정보가 이용되는 제반 정책제도와 연계성을 검토해야 한다. 회계정보가 사용되는 요금제도, 상호접속제도, 보편적서비스제도, 설비제공제도, 공정경쟁제도와 관련한 기준들을 분석하여 통신회계규정이 그러한 제도목적에 적합한 원가정보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회계분리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다.

넷째, 회계전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 또는 명확화해야 한다. 회계전문위원회에 회계분리기준에 관한 해석권 및 추가조항 신설권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결정이 회계분리기준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함으로써 적시에 정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국제회계기준에 대응하여 통신회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의 회계처리에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K-IFRS)은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공시체계, 자산과 부채의 평가방법 및 정책적 목적 등의 반영여부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통신회계상 관련 규정 명시 및 정비가 필요하다.

여섯째, IP기술과 네트워크 진화를 반영한 수평적 규제를 마련하고 이에 적합하게 회계분리기준을 보완해야 한다. 현행 회계제도는 역무구분, 설비구분, 음성/데이터 구분을 설정하고 있으나, All-IP망이 현실화되면서 콘텐츠 계층과 네트워크 계층으로 구분되는 수평적 규제하에서는 콘텐츠와 네트워크 계층의 분리 규제가 예상되고

통신역무는 단일화 되어질 것이다. 따라서 수평적 규제하의 콘텐츠 계층과 네트워크 계층간의 원가를 분리하고, IP기술과 네트워크에 적합한 회계분리 배부기준의 연구가 필수적이라 사료된다.

일곱째, 회계보고 의무 사업자의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 수평적 규제체계가 실현될 경우 사업자 구분은 전송사업자로 단일 구분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기간/별정/부가 통신사업자의 구분에 의해 회계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상황평가에 의해 회계보고 의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에게 회계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함창용 외 10인(2007), 「융합에 대비한 개별 행위규제 개선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_____ 3인(2005),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 개선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_____ 3인(2004),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 개선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_____ 15인(2004), 「2002회계연도 접속원가 검증: SK텔레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_____ 4인(2003), 「통신서비스 회계기준 개선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_____ 5인(2002), 「전기통신사업의 규제회계제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_____ 6인(2000), 「기간통신사업자 영업보고서 원가검증 및 회계제도 정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이종화 외 5인(2005), 「통신시장의 판매영업 관련 이론 및 규제 이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2008. 2. 29
- _____,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2008. 2. 29
- _____,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2008. 5. 19
- 이영진(2004), “해외 이동통신서비스 단말기 유통구조와 보조금 지급동향 분석”, 정보통신정책 제16권 21호 통권 359호, 2004. 11. 16
- 금융감독원 보도참고 자료, 「기간약정 단말기 보조금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회신」, 2008. 7. 3
- 총무성, 전기통신사업법(昭和59년 12월 25일 법률 제86호), 2007. 12. 8 최종개정
- _____,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昭和60년 4월 1일 정령 제75호), 2007. 1. 4 최종개정
- _____,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昭和60년 4월 1일 우정성령 제25호), 2007. 11. 21 최종개정

총무성,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 개요: 참고자료 1”, 2007. 10

Ofcom, Communications Act 2003, 2003. 2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Congress, “Communications Act of 1934”

FCC, 47 CFR Part 32 “Uniform System Accounts for Telecommunications Companies”

ACCC, Trade Practices Amendment(Telecommunications) Act 1997, 1997

<http://www.fcc.gov/wcb/armis/>

<부록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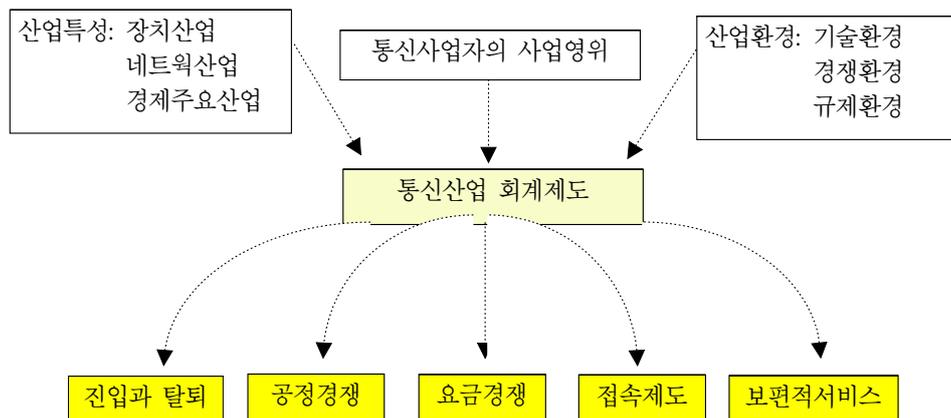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 장기발전 방향

◎ 경희대학교 강병민 교수

1. 통신정책에서의 통신회계기준과 법적체계

- 통신서비스의 원가정보는 요금제도, 접속제도, 보편적서비스제도, 공정경쟁제도 등 제반 정책결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고 있음
- － 따라서 원가정보를 산출하는 통신회계기준을 환경변화등에 대응한 정비와 개선은 효율적·효과적 정책수행을 위한 필수사항임
- － 반면에 통신회계의 문제점과 원가정보의 부적절한 정책반영은 규제실패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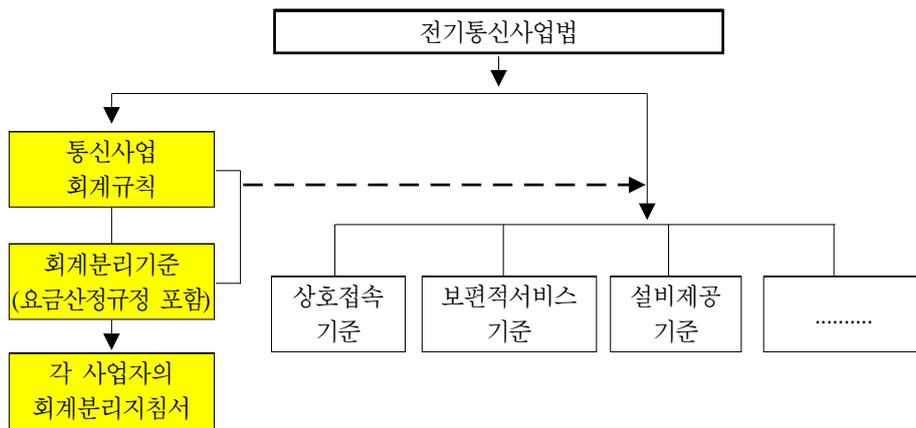
〔그림 1〕 통신산업에서 회계제도의 역할



- 현행 한국의 통신회계규정은 사업법 제36조의2에 근거를 두고 “회계규칙” 및 “회계분리기준”으로 구성된 법적체계를 갖추

- 또한 사업자의 회계분리지침서도 통신회계제도의 구성요소임

[그림 2] 전기통신사업 회계규정의 법적체계



2. 현행 통신회계기준에 대한 검토사항

가. 최근 기술발전과 통신수요의 다양화에 따라 신규서비스, 지능망서비스, 결합 서비스 등을 회계분리기준에 반영할 방안 강구

- 최근의 기술발전, 수요다양화, 경쟁활성화 등에 따라 사업자들은 경쟁력 제고 및 수익창출을 위해 지능망서비스,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 있음
 - 초고속인터넷의 폭발적 수요증대로 인해 음성, 데이터, 영상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VoIP, IPTV, Wibro 등 멀티미디어 통합서비스로 발전하는 추세 이고, 궁극적으로 통신, 방송 및 인터넷의 대통합으로 차세대 통신망인 NGcN을 통한 All-in-One Network이 실현되라는 전망임
- 따라서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규제대상서비스, 본서비스 및 추가·부가서비스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각 서비스별 원가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회계분리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 용어정의를 명확히 하고 다음의

- 이슈들에 대해서도 통신회계규정에 그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전국대표전화 등 지능망전화서비스 및 인터넷쇼핑몰, 종합물류정보망, 대출중계서비스 등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구분기준을 명문화
 - 무선통신 비중의 확대에 따라 LM서비스등을 별도 서비스로 구분함을 고려
 - 또한 통방융합 추세를 반영하여 법적 체계면에서 IPTV사업등까지 고려한 회계분리기준을 정립하는 반면에, 요금기준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
- 나. 데이터통신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통합망(All-in-One Network)이 실현됨에 따라 이를 회계기준에 반영할 방안 강구
- 우선, xDSL, cdma2000-1X 등은 거의 동일한 망을 통하여 음성과 데이터통신을 제공되고, 데이터통신의 비중이 증가됨에 따라 음성통신과 데이터통신에 대한 정확한 원가동인을 파악하여 합리적 회계분리 규정을 검토할 필요
 - 유선망에서의 분리기준
 - ① 전화+ADSL 가입자선로의 음성/데이터 분리비율: 5:5로 적용
 - ② 가입자중계구간(광가입자망)의 음성/데이터 분리비율: 1:9로 적용
 - ③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상 “고주파수회선의 분리제공대가”: 동선일괄제공대가의 50%
 - 무선망에서의 현행 분리기준(데이터통신의 별도구분 없이 접속원가계산규정)
 - ① IS-95A/B 원가는 모두 음성관련 원가로 간주하고 접속원가에 포함
 - ② CDMA2000-1x 원가 중 음성/데이터 공통원가에 대한 분리비율: 9:1로 적용
 - 단, 이동단국 및 이동중계 교환설비 원가는 모두 음성원가로 간주
 - ③ CDMA2000-1x EVDO 원가는 모두 데이터관련 원가로 간주(?) 등
 - 통합망이 구현됨에 따라, 물리적 구간을 특정 서비스로 지정한 후 이에 따라 내부거래에 의한 회계분리는 부적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
 - 또한 배부기준들의 타당성에 대한 실증적 검토도 필요함: (예)“E1급 기준”

다. 인수합병에 따른 회계처리 및 회계분리를 회계기준에 반영 검토

- 통신회계는 회계분리를 주내용으로 하고 있고, 회계규칙 제3조는 “회계정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를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인수합병 이슈의 대부분은 재무회계의 이슈임
 - － 그러나, 회계분리기준 제7조제3호에 따르면 “.....인수합병으로 유형자산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인수합병회사의 각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한다.”로 되어 있음
 - － 이 조항은 인수합병전의 피인수합병회사의 유무형자산(감가)상각비는 요금, 접속료 등의 원가로 계상되어 이미 보상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인수합병회사가 인수하는 유형자산등의 장부가액에 대해서만 원가로 인정하여 보상하여 준다는 취지임
 - － 한편, 회계분리기준상에는 인수합병으로 발생한 영업권등을 정책상 원가 인정 여부가 불명함함
 - － 따라서 회계분리기준상 이러한 이슈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인수합병과 관련한 통신회계의 또다른 이슈는 영업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것임
 - － 기간통신사업자가 영업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당해 연도에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한 별도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규제기관에 제출함이 원칙임
 - － 그러나, 피인수합병사업자는 영업보고서 작성시점에서 존재하지 않으므로 검증하기 어렵고 그 보고서의 정책상 유용성도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음
 - － 따라서 인수합병법인이 영업보고서를 통합하여 작성 및 제출하도록 하되, 합병이전의 각 사업자별 자료를 각각 구분하여 비치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라. 투자보수율 산정방식을 통신회계기준에 구체화하는 방안을 모색

- 투자보수율은 원가의 핵심 요소들 중의 하나임
 - － 투자보수율은 회계분리기준(제33조), 상호접속기준(제30조), 보편적서비스

- 기준(제5조), 설비제공기준(제31조) 등에 방통위가 정한다고 되어 있을 뿐, 산정방식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논란거리가 되고 있음
- 한편, 영업보고서 양식에는 투자보수를 계산하여 원가보상율을 제시하도록 함
 - － 회계분리기준(제33조 제3항)에 의하면 투자보수율을 방통위가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 상호접속기준에 의하여 정한 투자보수율을 적용하도록 함
 - － 이러한 접속기준에의 의존은 회계규정이 접속료 산정에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법적체계상 일관성이 없는 규정임
 - － 또한 접속원가검증은 매년이 아니라 2년마다 수행되고 장기증분원가에 기초하기 때문에, 접속기준상의 투자보수율은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
 - 투자보수율 산정방법에 대한 규정의 부재는 부정확한 원가산정 또는 비효율적 규제가 될 수 있음
 - － 구체적 규정의 부재로 인하여 방통위가 모든 기간통신사업자의 투자보수율을 산정하여 발표한다는 것은 무리임
 - － 따라서 회계기준상 투자보수율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사업자가 산출하여, 이를 영업보고서 작성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 방통위는 사업자가 산출한 투자보수율에 대한 타당성만 확인하면 됨
- 마. 회계정보가 사용되는 제반 정책제도와 연계성 검토 및 회계분리 정도의 조정
- 회계정보가 사용되는 요금제도, 상호접속제도, 보편적서비스제도, 설비제공제도, 공정경쟁제도와 관련한 기준들을 분석하여 통신회계규정이 그러한 제도목적에 적합한 원가정보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는지를 검토: 예를 들어
 - ① 상호접속제도를 위하여, 망관련원가와 망무관원가의 분리를 검토
 - ② 보편적 의무제도를 위하여, 손실보전금 산정과 관련한 보편적역무 구분체계를 반영하면서 지역별 회계분리와 관련한 회계분리절차 및 배부기준의 타당성을 검토
 - ③ 상호접속, 가입자선로 공동활용, 통신설비제공, 재판매 등의 제반 제도 및 통방융합에 유용한 정보 또는 기초적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망세분

화의 적정성을 검토

바. 회계전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 또는 명확화

- 회계전문위원회의 권한확대는 통신산업의 환경변화가 심하고, 이에 따른 모든 필요조항을 회계기준에 명확히 규정하기는 어렵고 매번 기준개정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기적절하고 명확한 회계기준을 유지하기 어려움임
 - 따라서 회계전문위원회에 회계기준에 관한 해석권 및 추가조항 신설권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결정이 회계기준과(상충되지 않는 한)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함으로써 적시에 정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
 - 기업회계기준도 이러한 체계를 가지고 있음

◎ 대주회계법인 오충한 회계사

1.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통신회계제도

- 2011년부터 대부분의 통신사업자의 경우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으로 자산을 재평가법에 의해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실제 2010년의 자료가 비교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므로 2009년부터 국제회계기준도입을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함)
- 통신산업은 장치산업이므로 유형자산의 가액이 타산업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함
- 통신사업자별로 유형자산을 원가법(역사적원가) 또는 재평가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음(국제회계기준에 의거)
- 경쟁적인 통신회사별도 다른 정책(원가법 또는 재평가법)을 사용하는 경우 규제기관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자별 원가보상을 등 비교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며 일관된 규제정책을 펴는데 어려움이 예상됨
- 따라서 통신회계에서도 이러한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한 규정 정비작업이 필요할 것임
- 전통적으로 통신회계는 취득원가보다 더 보수적인 개념인 원시원가(Original

Cost)개념이 있어 해당 자산의 원시구매금액만을 요금산정을 위한 취득원가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통신자산을 재평가하는 경우(주로 토지, 건물, 구축물, 관로 등) 평가증이 예상되며 이러한 평가증은 원가보상률을 낮추게 되어 요금인상 또는 요금유지 경향이 높아질 것임. 이러한 회계기준 변경은 경쟁적인 통신환경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규정개정방향의 이슈

가. 요금규제를 위한 역사적원가 고수 여부

나. 통신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 조정방안을 규정개정안에 포함 시킬지 여부

다. 상호접속료 및 각종 설비제공대가 기준의 개정여부

* 현재의 상호접속료에서의 원가는 장기증분원가방식으로 접속료를 산정하고 있으며 Hybrid 방식으로 LRIC를 산정하고 있음

* 이 때 Top Down 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역사적원가자료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향후 K-IFRS 에 의해 통신사업자가 재평가법(Revaluation)에 의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역사적원가자료가 산정되지 아니함.

* 따라서 현행의 상호접속기준에서 회사가 K-IFRS를 적용한 Revaluation Model 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역사적원가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는 조항이 필요할 것임

* 한편 설비제공대가는 현재 표준원가계산방식을 도입하여 산정하고 있으나 투자비(관로의 일반지원자산; 토지 등) 설계를 위한 역사적원가정보가 필요함. 따라서 해당 역사적원가자료를 유지, 관리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란?

한국회계기준원과 국제회계기준도입준비단은 2007년 3월 15일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발표회에서 국제회계기준을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으로 도입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로드맵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모든 상장기업은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적용

하되, 상장기업을 포함하여 비상장기업도 희망하는 경우 2009년부터 조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계기준위원회는 광범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11월 23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포함한 37개의 기준서,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0호 ‘정부지원: 영업활동과 특정한 관련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 21개의 해석서 및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로 구성된 회계기준을 제정하였는바 이것이 바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입니다.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비교하면 주로 공시체계, 자산과 부채의 평가방법 및 법률 또는 정책적 목적 등의 반영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시체계에 따른 차이로는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개별재무제표를 중심으로 공시하고 연결재무제표는 부수적으로 기말보고서에만 차후에 공시하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모든 공시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산과 부채의 평가방법에 따른 차이로는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은 정보의 신뢰성을 중시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항목에 대하여는 역사적 원가로 평가하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정보이용자에게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법률 및 정책적 목적에 따른 차이로는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법률 및 정책적 목적에 따라 현실을 고려하여 일부 항목에 대해 특정한 회계처리를 규제하거나 허용하고 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거래의 실질에 맞는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주된 차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은 개별재무제표가 중심이 되는 재무제표이지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가 중심이 되는 재무제표입니다.
2.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은 지분법 적용범위를 종속기업 및 지배기업의 지분을 포함하여 판단하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종속기업의 지분만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3.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은 외부감사대상기업에 한하여 연결범위에 포함되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소규모기업도 연결범위에

포함됩니다.

4.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은 다른 회사의 지분을 30%초과하여 보유하면서 최대주주이면 당해 회사가 연결범위에 포함되지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50%초과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연결범위에 포함되며 실질지배력 기준이 강조됩니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주요내용

〈공시체계 및 재무제표 구성〉

구 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현행 회계기준
주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
재무제표 구성(제1001호)	① 재무상태표 ② 포괄손익계산서(1) ③ 현금흐름표 ④ 자본변동표 ⑤ 주식	① 대차대조표 ② 손익계산서 ③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④ 현금흐름표 ⑤ 자본변동표 ⑥ 주식

(1) 현행의 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수익과 비용(재평가잉여금의 변동, 해외사업장의 외화환산손익 변동 등) 즉, 기타포괄손익이 포함된 손익계산서

〈자산의 평가〉

구 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현행 회계기준
재고자산(1002호)	표준원가(1)가 실제원가와 '유사한경우' 표준 원가법을 사용하여 측정가능	실제원가만 인정
유형자산(제1016호)	원가모형(2)이나 재평가모형(3)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평가	원가모형만 인정
투자부동산(제1040호)	원가모형 또는 공정가치모형 중 선택하여 평가	원가모형만 인정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제1105호)	감가상각을 중단하며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측정	장부가액으로 측정, 감액여부 평가

- (1) 정상적인 재료원가, 소모품원가, 노무원가 및 효율성과 생산능력 활용도를 반영한 원가
- (2) 자산금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장부금액으로 표시
- (3)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장부금액으로 표시

〈부채의 평가〉

구 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현행 회계기준
퇴직급여채무(제1019호)	예측급여채무의 개념을 채택하여 보험수리적 방법(1)으로 측정	청산가치 개념 채택
상환우선주의 회계처리(제1032호)	발행자가 의무적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거나 보유자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면, 금융부채로 분류	자본으로 분류

(1) 미래의 퇴직급여를 추정할 때 미래의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며, 시장수익률에 기초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인

〈수익 인식〉

구 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현행 회계기준
생물자신의 수익인식 시점(제1041호)	생물자산과 수확물을 판매하기 이전기간에 자연적으로 증가한 가치에 대하여 발생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	현행기준 없음
수익인식 조건인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제1018호)	수익인식 조건의 하나인 '경제적효익의 유입 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높은가능성'을 제시함	'매우 높은 가능성'을 제시함

〈연결재무제표 및 관계기업 투자〉

구 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현행 회계기준
연결재무제표 작성자(제1027호)	모든 지배기업(최상위 지배기업, 중간지배기업)	최상위 지배기업
연결기준의 중간재무보고(제1034호)	연차재무제표가 연결기준으로 작성되었다면 중간재무보고도 연결기준으로 작성	현행기준 없음
단계적 취득으로 중대한 영향력 획득시 투자차액(영업권)산정(제1028호)	중속기업을 단계적으로 취득할 때 사용한 회계처리 절차의 기본 개념(단계법)을 적용함	일괄법을 사용하여 투자차액(영업권)산정

5.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은 투자부동산을 취득원가로 평가하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공정가치 평가를 허용합니다.
6.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은 인식시점 이후에 유형자산 측정시 원가모형을 적용하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안진회계법인 박언용 회계사

1. 서론

- 전기통신사업회계기준이 국내전기통신사업의 경쟁도입과 함께 연구되기 시작한 1990년부터 20여년 정도가 경과하였으며, 큰 틀의 변화보다는 접속료규정의 변화 및 요금규제의 변화에 따라 필요시 개정되어 전체적으로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방송통신의 융합으로 인하여 규제의 폭이나 해당 사업자의 폭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내 사업자 구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에 즈음하여 기존의 회계제도의 틀을 upgrade할 필요성이 대두됨.

2. 변화의 방향

가. 회계기준의 일원화

- 전기통신사업회계처리기준이 회계처리규칙과 회계분리기준(고시)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당초 이원화의 이유는 회계분리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었음.
- 이에 따라 회계분리기준에서 너무 실무적인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생겼으나, 실제 통신시장의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는 관계로 실효성이 낮은 규정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 예를 들어, 영업보고서는 회계정보의 산출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회계부서에서도 신경을 쓰고 정확한 정보를 산출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제출하기 위한 자료를 큰 하자없이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대신 자신의 경영관리를 위한 관리회계에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음. 또한 회계분리의 출발점을 재무회계의 수칙에서 시작하다 보니 정보통신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회계처리를 반영할 방법이 없어짐. 수년전, sk telecom의 영업권 issue, KT의 명예퇴직금 issue, SK telecom의 퇴직금중간정산금의 issue 등이

이러한 상황에 해당함. 또한 영업보고서 검증의 과정에서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 등이 없는 관계로 피상적인 검증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또한 매년 분리기준 개정으로 인하여 사업자들이 느끼는 기준의 권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임

- 회계처리규칙을 일원화하고,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각 사업자가 작성하는 원가분리지침서의 검증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나. 적용대상의 폭을 확대

- 당초 회계처리기준은 통신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방송사업자 및 방송통신 겸영사업자가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고, 이에 맞는 내용을 보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 통신시장환경변화의 반영 및 종합적 해외사례연구

- 당초 회계처리기준을 만들 때, 미국 및 일본의 관련 규정을 많이 참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해외사례조사가 있었음.
- 그동안 부분적으로 필요에 따라 해외사례를 조사 참고하였으나, 20여년이 지났으므로 미국, 일본, 호주, 영국, 프랑스 등의 해외 규제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국내 기준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저 자 소 개 ●

함 창 용

-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 졸업
- 미국 Michigan주립대학교 경영학 석사
- 미국 California(Berkely)대학교 경영학 박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공정경쟁정책 연구실 실장

오 성 백

- 일본 Christian International 대학교 졸업
- 일본 Christian International 대학교 행정대학원 계량경제학 석사
- 한국과학원 산업공학 석사
- 미국 Wisconsin-Madison대학교 경영학 박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 훈

- 성균관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맹 승 찬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책연구 08-50

역무통합 등 통신환경 변화에 따른 통신 회계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8년 12월 일 인쇄

2008년 12월 일 발행

발행인 방 석 호

발행처 정 보 통 신 정 책 연 구 원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1-1

TEL: 570-4114 FAX: 579-4695~6

인 쇄 인 성 문 화

ISBN 978-89-8242-499-1 93320

1. 본 연구보고서는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수행한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입니다.
2.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